

중국경제 FOCUS

2002. 11.

산업자원부
대중국 투자·자원 협력반

목 차

□ 초 점	1
중국 WTO 가입 1년의 평가와 진출 대책 / 3	
□ 투자·자원 정보	23
중국투자기업 경영현황 설문조사 결과 / 25	
광저우 등 5개 도시, 외국은행 위안화 영업 허가 / 48	
중국 소매유통업 7대 발전추세 전망 / 49	
中, 외자기업의 상장社 인수합병 확대 허용 / 51	
□ 전문가 논단	55
한-중 수교 10주년을 계기로 본 ‘Made in China’의 부상과 한국의 선택 / 57	
디플레이션도 ‘Made in China’인가? / 81	
□ 법규와 제도	91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 93	
중점납세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방법 / 101	

초 점

중국 WTO 가입 1년의 평가와 진출 대책

- 5가지 변화와 5가지 추세 -

KOTRA 박한진 과장(chinapark@kotra.or.kr)

1. WTO 가입 1년의 평가 : 5가지 변화

□ 법제화 진전

-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준비과정에서 총 2,700여건의 경제관계 법령을 제(개)정한데 이어 2002년 들어서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작업을 가속화함
- 2002년 중 발효된 법령 중에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무역·투자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 수출입 : 화물수출입 관리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
 - : 기술수출입 관리조례(技術進出口管理條例)
 - : 수출입화물과세가격 결정방법(進出口貨物完稅價格辦法) 등
 - * 반덤핑 : 반덤핑조례/반보조금조례(反傾銷條例/反補貼條例)
 - :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對外貿易壁壘調查暫行規則) 등
 - * 투 자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등
 - * 지재권 : 소프트웨어 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등
- WTO 가입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 중국의 최대 변화는 법제화의 진전으로써 이는 단순한 수입관세율 인하 또는 비관세 장벽 완화 이상의 의미를 지님
 - 법제화 진전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중국의 법제화는 과도기로서 중앙의 결정내용과 지방 차원의 집행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도표 1> WTO 가입 후 발효된 중국의 주요 경제관계 법령 1)

구 분	주요 법령·법규·규정	시 행 일
수출입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2002. 1. 1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	2002. 1. 1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2002. 1. 1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2002. 1. 1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2002. 1. 1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2002. 1. 1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관리 시행세칙	2002. 1. 1
	특정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시행세칙	2002. 1. 1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방법	2002. 1. 1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관리 시행세칙	2002. 2. 8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2002. 3. 14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2002. 5. 1
	수출입상품 검사법	2002. 10. 1
	변경무역 발전을 위한 보충규정 통지	2002. 10. 24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례	2002. 1. 1
	반보조금 조례	2002. 1. 1
	세이프가드 조례	2002. 1. 1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	2002. 11. 1
투자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 관리규정	2002. 1. 1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	2002. 1. 1
	국제해운조례	2002. 1. 1
	외국인기업 재투자 기업소득세 우대정책통지	2002. 1. 1
	외국인기업 기업회계제도 집행에 관한 통지	2002. 1. 1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 대표기구 관리조례	2002. 1. 1
	중외합작 음향·영상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	2002. 1. 10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	2002. 1. 29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2002. 2. 1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2002. 2. 1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2002. 4. 1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2002. 1. 1
	올림픽회장 보호조례	2002.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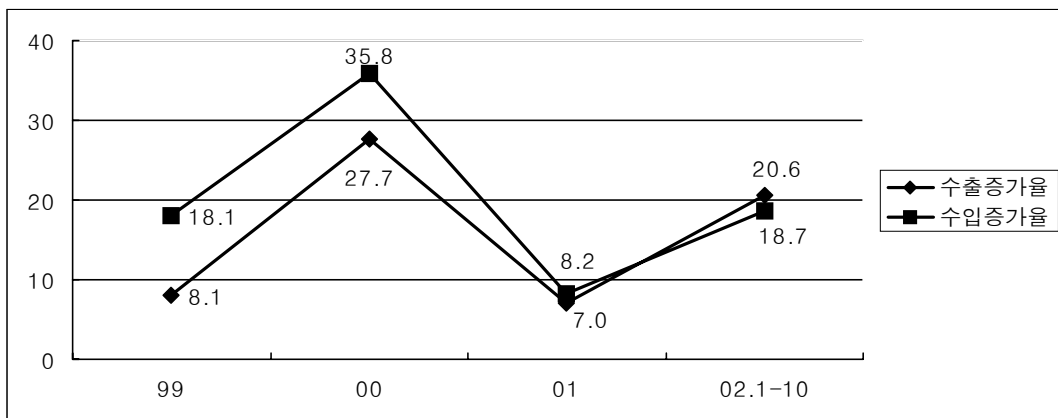
1) 세부 리스트와 내용은 KOTRA, 「WTO 최신 중국 경제법령집」 (2002. 6.)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홈페이지(www.moftec.gov.cn) 참조

□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 상회

- 중국은 당초 WTO 가입 후 수입관세율 인하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02년 1~10월 중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함
- 1999~2001년 중에는 매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도표 2>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 이는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율 인하라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외자기업과 非국영기업의 수출기여도 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02. 1~9월 중 전체 수출증가율은 19.4%이나 외자기업과 非국영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23.9%와 61.8%에 달함
- * 국영기업 수출증가율은 7.1%에 불과
- WTO 가입이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예상과는 반대로 '단기간에는 긍정적(수출증가)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수입증가)일 수도 있다'(先甜後苦)는 지적도 제기됨

□ 중국 자체조달 비율 증가

- 현재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원산지규정 적용)은 일본-대만-한국-미국-독일-중국의 순이나 중국의 자국산 제품 수입이 2002년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금액은 '98년 30.2억 달러에서 '01년 87.8억 달러로 190% 증가해 같은 기간 중국 전체의 수입증가율 75%를 크게 웃돌고 있음
- '02년 1~9월 중에도 전년동기 대비 68.9%나 증가(104.7억 달러), 주요국별 수입증가율에서 단연 1위임

<도표 3>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 증가율(2002. 1~9)

(단위 : %, US\$)

전체	일본	대만	한국	미국	독일	중국
17.2 (2,126억)	20.4 (385.4억)	38.3 (273.5억)	13.5 (200.0억)	0.2 (198.5억)	20.0 (121.4억)	68.9 (104.7억)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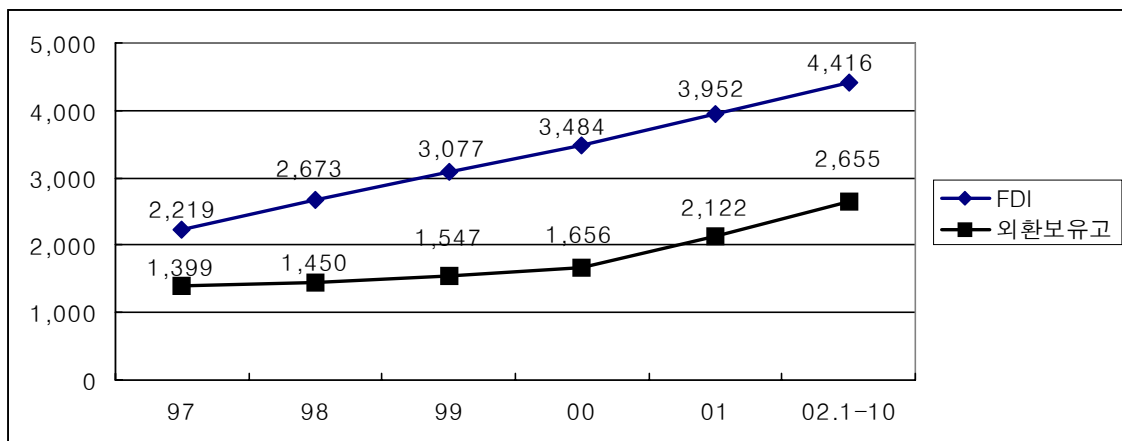
- '02년 1~9월 중 중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증가율이 특히, 높은 품목은 전기기기(HS 85; 89.7%), 기계류(HS 84; 97.5%), 면(HS 52; 47.7%), 알루미늄(HS 76; 132.1), 지류(HS 48; 129.7%), 가죽(HS 41; 72.8%) 등임
- 전기기기, 기계류, 지류, 가죽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함('02년 1~9월 실적기준 모두 10위 이내)
- 중국의 대중국 수입은 ▷ 홍콩 등 해외 중계무역상에 의한 중국산 제품의 대중국 재수출(re-export) 확대와 유관함
- 홍콩의 중국산 제품 對중국 재수출 증가율은 2001년 17.4%에서 '02년 1~9월 중 31.1%로 크게 상승함

□ 외국인투자유치 급증

- 중국은 WTO 가입 후 외국인직접투자와 외환보유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1~10월 중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승인 기준으로 765억 달러(전년동기 34.9% 증가), 실행기준으로 464억 4천만 달러(19.7% 증가)를 기록함
- 외환보유고는 2001년 12월 말 2,122억 달러에서 2002년 10월 말 현재 2,655억 달러로 10개월 새 535억 달러 증가함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과 외환보유고는 2001년에 하루 평균 각각 1.3억 달러씩 증가했으나 2002년 들어 10월까지 하루 평균 각각 1.5억 달러, 1.8억 달러씩 늘어남

<도표 4> 중국의 FDI 및 외환보유고 증가 추이

(단위 : US\$ 억)



주 : FDI는 실행기준

자료원 :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www.moftec.gov.cn)

- 외국인투자기업은 '01년 중국 전체 稅收의 20% 부담, 대외수출의 50% 담당, 외환보유고 증가분의 73.6% 차지, 도시 근로자의 10% 고용 등으로 중국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음

□ 공급과잉 갈수록 심화

-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경무위; www.setc.gov.cn) 자료에 따르면, 600개 주요 상품의 공급과잉비율이 2001년 하반기 82.9%에서 86.3%('02. 상반기)→88.0%('02. 하반기)로 심화되고 있음
 - '02년 하반기 중 산업별 공급초과와 수급균형의 비율은 농산물(134개)이 79.1:20.1, 공산품(466개)이 90.3%:9.7로 공산품의 공급과잉이 보다 심각
- 공급과잉 심화는 대내외 요인이 맞물린 때문이며 자체 생산력 확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확대로 공급증가 요인은 커지고 있으나 수요측면의 호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내 요인 :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소비시장 침체
 - 대외 요인 : 세계 경기회복 지연
- 공급과잉 심화로 소비부진→물가하락→기업채산성 악화 구조가 우려되고 있음
 - 공장출고가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 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s)는 '00년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02년 1~10월 중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함
- 중국의 소비부진은 실물경제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심리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강함
 - 급격한 체제변화로 당장의 소비보다는 장래를 대비한 저축에 집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개인 위안화 저축예금은 '01년 말 7조 3,700억 위안에서 '02년 9월 말 8조 4,100억(한화 약 1,312조 원)으로 14.1% 증가
 - 향후 민간자금의 동향이 소비경기 회복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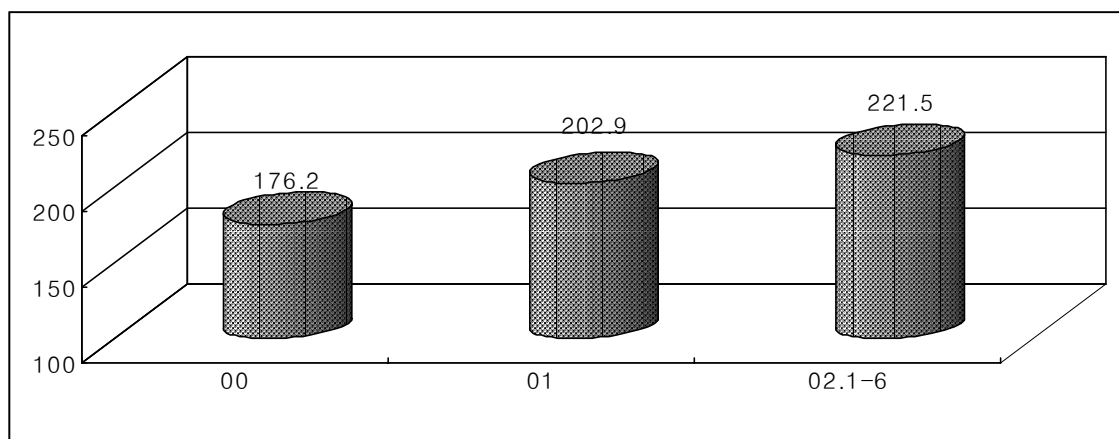
2. 새로운 움직임들 : 5가지 추세

□ 민간경제 급성장

- 중국의 전체 등록기업 수는 80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사영기업 숫자가 '00년 176만 2천개에서 202만 9천개('01)→221만 5천 개('02. 1~6)로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중국공상행정관리국(www.saic.gov.cn) 자료에 따르면, 그룹화된 사영기업만도 2,185개에 달함
- 사영기업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진 지역으로는 상하이, 충칭(重慶),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등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영기업의 비중이 50%를 넘어 지역 경제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
- * 상하이의 경우, 대외무역권을 보유한 사영기업이 '01년 7월 당시 68개사에서 '02년 10월 말 현재 1,602개를 기록, 매월 평균 100여 개사 씩 증가함

<도표 5> 중국의 사영기업체 증가 추이

(단위 : 만개사)



주 : FDI는 실행기준

자료원 : 中國國家工商行政管理局(www.saic.gov.cn)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으로 사영기업을 인정해왔음 2)
-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국영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일부분도 사영기업이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3)
- 中國新聞網(www.chinanews.com.cn) 보도에 따르면, 향후 사영기업의 진출이 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교통운수업, 창고업, 사회서비스업, 건축업 등임
-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종래 국영기업이 독차지했던 통신분야의 부가서비스, 금융, SOC 건설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도 사영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4)

2) 2002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사영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영기업, 외국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직원 역시 사회 발전의 주역”이라고 밝혀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그러나, 중국이 사영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법적지위를 인정한 것은 1999년 3월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사영기업의 경제공헌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www.cass.net.cn)은 2001년 12월 ‘당대 중국 사회계층 연구보고’(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라는 보고서를 통해 1949년이래 견지해온 2개 계급과 1개 계층(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지식인계층) 이론에 수정을 가해 경제적으로 일정수준에 이른 중산층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도표 6> 참조

3) 홍콩경제일보(香港經濟日報) 2002년 11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01년 이후 '02년 10월까지 모두 9개의 상장기업이 MBO(Management Buyout; 경영자 인수)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함. 이 신문은 9개 MBO 사례 중 4개가 국영기업으로써 이는 사실상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16大를 계기로 MBO를 통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표 6> 중국의 10대 사회계층

등급	구성	사회적 지위	총인구중 점유율(%)
上層	1.국가 및 사회 관리층	-黨政, 주요 기관의 지도급 인사	2.1
	2.기업 관리층	-대중형 기업의 중상층 관리자	1.5
中上層	3.민간기업주	-대규모 개인자본을 투자, 이윤을 얻는 계층	0.6
	4.전문 테크노크라트	-전문기술과 학력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	5.1
中中層	5.사무직	-각 부문별 책임자를 보좌하는 전문사무직	4.8
	6.個體商工戶	-소액의 자기자본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계층	4.2
中下層	7.상업서비스업종 직원	-상업.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	12.0
	8.제조업종 근로자	-제2차 산업에 종사하는 육체 근로자	22.6
下層	9.농업근로자	- 농민	*
	10.무직, 실업자	-일상적 직업이 없는 계층(학생 제외)	3.1

주 : *(정확한 농민인구 비율 산출은 어려움)

자료원 :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中國社會科學院)

- 그러나, 민간경제부문의 지배적 위치 부상 내지는 국영부문의 급속한 와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국은 이른바 ‘중국식 (Chinese characteristics)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양자를 조화시켜 나갈 전망 5)

- 4)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 중국은 종래 서비스분야에 대해 외국기업에게는 점진적으로 개방해왔지만 자국(사영)기업의 투자는 제한해왔음. 그러나, 최근 저장(浙江)성의 8개 상업은행이 향후 3년내 민간자본이 지배주주권을 구성하도록 결정한 것은 향후 기타 서비스분야에서도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 5) 최근 중국은 자본가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포브스가 중국의 제2위와 3위 부호로 선정한 어야그룹(歐亞集團)의 양빈(楊斌)주석과 화천자동차(華晨汽車)의 양룽(仰融) 주석을 탈세와 탈법혐의로 단속함

□ 중국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일부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해외투자를 허용해왔으나 최근 동부와 남부 연해지역의 가전, 방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른바 ‘저우추취’(走出去)라 불리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1960년대의 일본, 1980년대의 한국의 경우와 같이 자국 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
 -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중국 국내시장이 제조업규모의 급성장을 떠받치기에 역부족이며 늘어난 외환 보유고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제까지 중국의 해외투자(자본이동)는 아래와 같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음
 - 합법적 경로 : 대형 국영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중소 민간기업의 해외 가공무역투자
 - 불법적 경로 : 개인(또는 제3국) 명의의 해외투자 6)
- 중국 정부는 향후 경쟁력있는 국영기업과 사영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7)

6) '02년 6월말 현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공식적으로 6,758건, 89억 달러지만 불법적인 자본도피를 포함,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7)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쿼터관리를 하고 있고 100단계 이상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두고 있음. 또한, 해외투자관련 법령규정은 국영기업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사영기업에 대해선 입법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 밖에도 엄격한 외환통제와 해외투자 위험담보기관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국은 현재 이에 대한 법령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관시’(關係) 영향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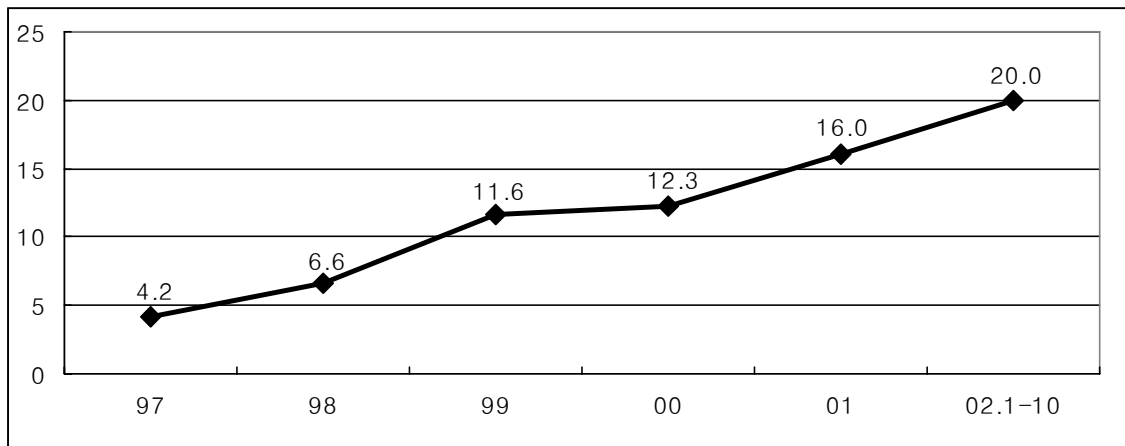
- 중국에는 “拉關係 占便宜”(관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多一個朋友, 多一條路”(친구를 하나 더 알면 길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말도 관시의 위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중국 유력자 또는 유력기관과의 관시를 활용해 큰 도움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법제화,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관시와 같은 종래의 불문율(不文律)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준비 과정에서 총 2,700여 건의 경제관계 법령을 손질했고 법제화, 제도화작업은 앞으로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고 관시의 비중은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무작정 관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국의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경영기반 위에서 관시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전략의 하나로 활용해야 함
 - 중국이 최근 양빈(楊斌)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을 체포한 것도 탈세 등으로 현행 법을 위반했기 때문임
 - 대만전기전자공업협동조합(臺灣電氣電子工業同業公會)가 발표한 ‘2001년 중국 지역별 투자 및 리스크 환경평가 보고서’도 대만기업에 대해 관시경영보다는 중국의 법령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성실하게 경영(正波經營)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특히, 稅制 관련 사항은 관시보다는 철저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비용 구조

- 중국은 실업률 상승 8) 속에서도 구직난과 구인난이 맞물리면서 해마다 임금상승률이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4.2%('97)→6.6%('98)→11.6%('99)→12.3%('00)→16.0%('01)에 이어 2002년에는 전년대비 최고 20%선에 이를 전망이다 * 올해 한국은 7.6%(경총 조사)
 - 이와 함께, 1990년 59일 이었던 근로자 연간 휴무일이 '90년대 중반 주5일 근무제 및 '99년 이래의 장기 연휴제도 시행으로 현재 114일로 크게 증가함
 - 임금상승과 휴무일 증가는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단일화 조치와 함께 고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표 7> 중국의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주 : 2002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원 : 中國統計年鑑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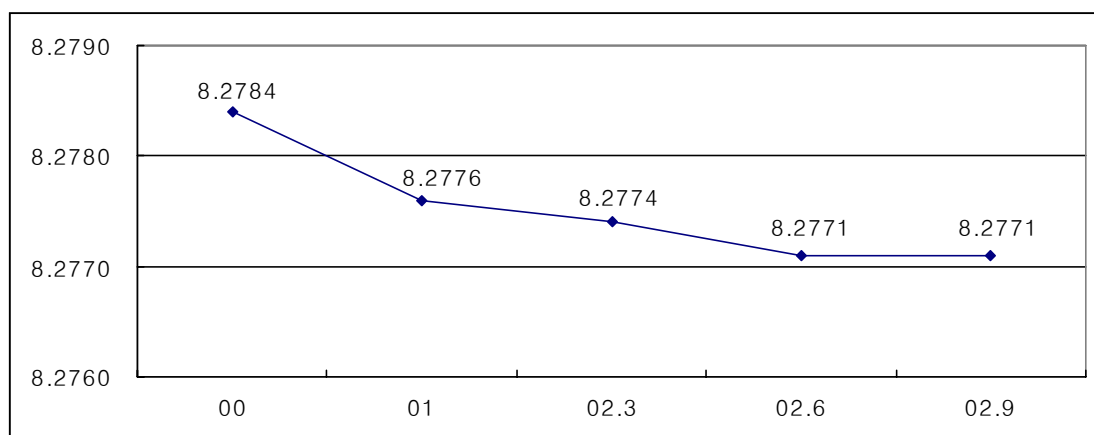
-
- 8) 중국정부가 집계한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은 '02년 9월 현재 3.9%이나 주룽지(朱鎔基)는 최근 중국의 실업률이 7%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20%선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중국 전문가들의 관측임

- 아시아 외환위기와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평가절하설이 무성했던 위안화가 안정세를 유지하며 평가절하보다는 평가절상 압력이 커지고 있음도 향후 중국 비즈니스(투자)가 고비용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함 9)
- 최근 대미 달러 위안화 환율은 미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임

<도표 8> 위안화 환율변동 주요 요인

요 인	중국의 현 상황
무역수지	- 최근 3년간 US\$ 220억~250억/年 흑자 기록 -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외국인직접투자	- '02년 10월말 누계 US\$ 4,416억(GDP 36%선)
외환보유고	- '02년 10월말 US\$ 2,655억(1년 수입금액 상회)
디플레이션	-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위안화 구매력 상승효과
고성장 지속	- 고성장 일수록 화폐가치 상승
외채구조	- 중장기 외채(70%) : 단기외채(30%)

<도표 9> 위안화의 대미 달러 명목환율 추이



자료원 : 中國人民銀行(www.pbc.gov.cn)

- 9) 상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1월 18일 홍콩 상공단체인 홍콩 총상회(www.hkgcc.org.hk) 주최 세미나에 참석, 위안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중국 관측통들은 '03년 3월 중국의 신 정부 출범 후 환율변동폭 확대를 통한 평가절상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음

□ 기업경쟁 심화

- WTO 가입 후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노력으로 법적,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도 있음 10)
 - 법제화 정비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전반적인 공급 과잉 구조 속에 신규 경쟁참여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기업 간 경쟁심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新산업 분야보다는 생산기업이 많은 재래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임
-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도 기업경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은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직수입보다 지방 간 물자교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11)
- 앞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10) KOTRA가 최근 실시한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8개 기업 중 54개 사(42.2%)가 중국의 WTO 가입 후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해 “변화없다”고 응답함. 그러나, 향후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115개 사(90.0%)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 봄. 한편, 헤리티지 재단 (www.heritage.org)의 세계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중국은 100위(‘00)→114위(‘01)→121위(‘02)→127위(‘03)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임

11) 최근년도 중국의 자국산 제품 수입증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성(省) 간 물자교류가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는 중앙 對 지방의 구도라기 보다는 지방 對 지방의 차원으로써 지방보호주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분할의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음

3. 시사점과 진출대책

□ 경기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국면은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일반적 의미의 순환 디플레이션과는 그 성격이 다름
 - 일반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향후 경기부진을 우려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은 단순히 경기부진을 우려하기보다는 장래의 예상 자금수요에 대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향후 약 5년 간의 체제 전환기를 지나 새로운 소비습관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현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수요 측면의 물가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디플레이션 탈출 시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향후 약 5년 간 심리적 불안요인이 지속돼 유효수요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 경우, 소비부진→물가하락→기업수익 감소→실업증가→경기침체→소비부진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도 있음
- 디플레이션 국면이 장기간 진행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국 기업들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시장은 2000년 경에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열점(消費熱點; 특정 소비재에 대한 집중 구매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으로 집중 구매현상은 없었음

□ 재산성 악화 구조에 대비

- 디플레이션 국면의 상품 체화기(滯貨期)에 가장 효과적인 시장 진출 전략은 산업별 특화전략을 마련, 월등히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
- 특정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불가하락 구조에 대비해야 함
 - 이윤 폭을 줄이고 발빠르게 변신하는 박리(small profits and quick returns)형 전략을 구사해야 함
- 가격 하락세가 특히 심한 가전제품은 중국내 제조상들이 상품 가격 인하분을 원부자재 공급상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어 부품 공급상의 경우, 거래선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우, 단기간내 내수판매 비중을 급속히 확대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요청됨

□ 시장 세분화 전략 구사

- 종래에는 단순히 지역별 경제특성을 감안한 차원에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 요청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상품 수급동향까지 파악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 일례로, 상당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가전제품의 경우도 지역별로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한편으로는 都-農 간 소득 및 소비구조의 차이를 감안, 농촌 보급형 제품 출시로 잠재 수요층을 공략해야 함

□ 저가 수출 지양

-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기업간 덤핑경쟁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격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됨
- 중국은 2001년 부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중국내 공급과잉 상태에서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을 지속할 경우, 자칫 중국 측에게 반덤핑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 시장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 생산량과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단순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야 함

□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 중국 기업을 경쟁상대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새로운 경제실체로 떠오르고 있는 사영기업들은 국영 기업에 비해 외상거래 요구가 적음에 착안해야 함
- 향후 예상되는 중국 내 M&A 시장 활성화에도 대비해야 함
- 현재 중국은 입법조치 미비 등으로 M&A 환경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향후 국영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02년 11월 발표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국)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는 향후 중국에서도 M&A가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함

□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기술)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선점 노력 필요
- 신산업 분야는 단독진출보다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IT 제품의 제2위 수출대상국

□ 호황에 대비한 투자 확대

- 비록 디플레이션 국면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소비시장 활황세에 대비해야 함
- 투자기업이라면 당장의 과실송금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운영자금 확보 또는 현지 재투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
- 또한, R&D(연구개발)와 제품 및 기업 이미지 광고에 투자를 확대해 호황기에 대비해야 함
- 일본의 소니가 최근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년 간 불황을 이유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와 함께, 현지연수 확대 등을 통해 사내 중국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자도 중국어 구사력을 보유해야 함

□ 경제법령 숙지

- 대중국 수출, 투자에 앞서 반드시 관계 법령을 숙지해야 함
-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국법령 검색이 가능한 주요 인터넷 정보원으로는 KOTRA(www.kotrachina.org), 주중 한국대사관(www.koreaemb.org.cn)와 www.chinalawinfo.com 등이 있음

□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활용

- 대중국 무역거래시에는 지난 '96년 12월 제정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미수금 방지 등에 효과적임
 - 표준계약서는 흔히 중국 측이 제시하는 중국식 무역계약서 사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관례를 참조해 영문으로 제정된 것임
 - 표준계약서는 KOTRA 중국지역 홈페이지(www.kotrachina.org)에서 全文을 다운로드받은 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중국기업들이 요구하는 편법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언더밸류와 외상거래는 가급적 회피해 미수금 발생소지를 없애야 함

□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확대

-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중국과의 양자협정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일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중국은 현행 정부 정책적 우대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節稅 방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WTO 체제와는 별도로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 추진해야 함

투자 · 자원 정보

중국투자기업 경영현황 설문조사 결과

KOTRA 해외조사팀 김명신

I. 설문 실시 개요

- ☐ 조사기관 : 산업자원부, KOTRA
- ☐ 시 기 : 2002. 11. 5~11. 19
- ☐ 설문대상 : 중국투자 한국기업
- ☐ 방 법 : KOTRA 중국지역 무역관을 통해 무역관 관할지역 소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경영현황, 중국 내수시장 경쟁동향, 애로사항, WTO가입후 변화 등에 대해 설문조사 후 평가·분석
- ☐ 수행 무역관 : 상하이, 베이징, 톈조우, 칭따오, 따리엔, 청두, 우한, 홍콩 무역관
- ☐ 회신 : 12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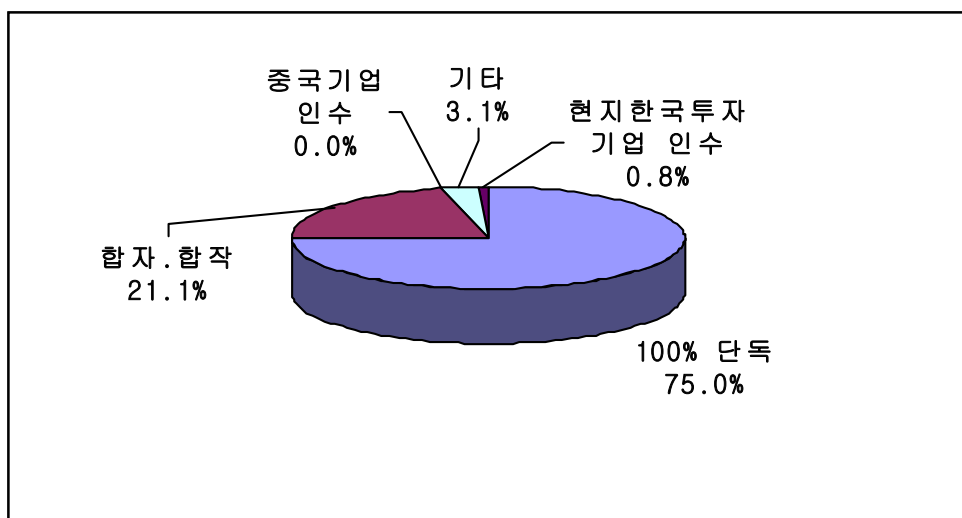
Ⅱ. 설문내용 및 결과

1 투자현황

□ 투자형태

- 100% 단독(독자) : 96건(75.0%)
- 합자·합작 투자 : 27건(21.1%)
 - 한국측 10%미만 : 0건
 - 한국측 10~50% 미만 : 3건
 - 한국측 50% : 6건
 - 한국측 50~100% 미만 : 17건
 - 무응답 : 1건
- 현지 한국투자기업 인수 : 1건(0.8%)
- 중국기업 인수 : 0건
- 기타 : 4건(사무소, 재투자 등; 3.1%)

〈 투자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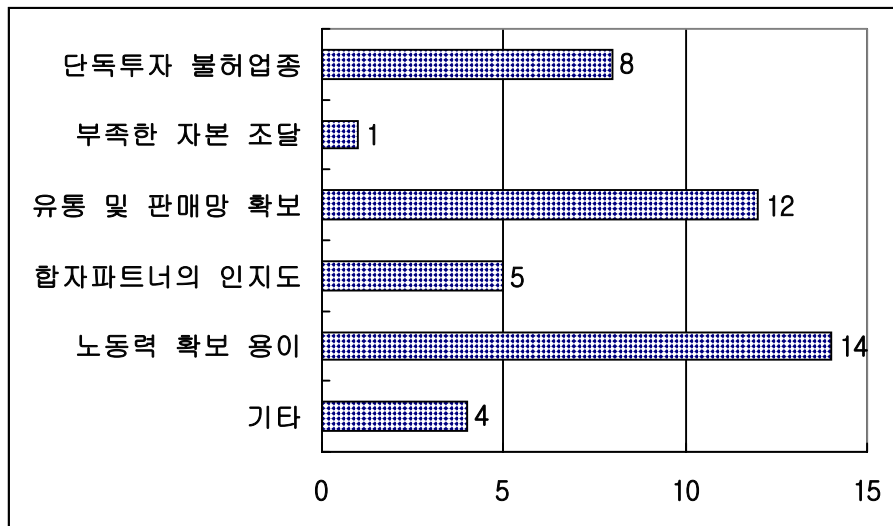


□ 합자·합작 이유(복수응답)

- 노동력 확보 용이 : 14건(31.8%)
- 유통 및 판매망 확보 : 12건(27.3%)
- 합자파트너의 인지도 : 5건(11.4%)
- 부족한 자본 조달 : 1건(2.3%)
- 단독투자 불허업종 : 8건(18.2%)
- 기 타 : 4건(9.1%)

〈 합자·합작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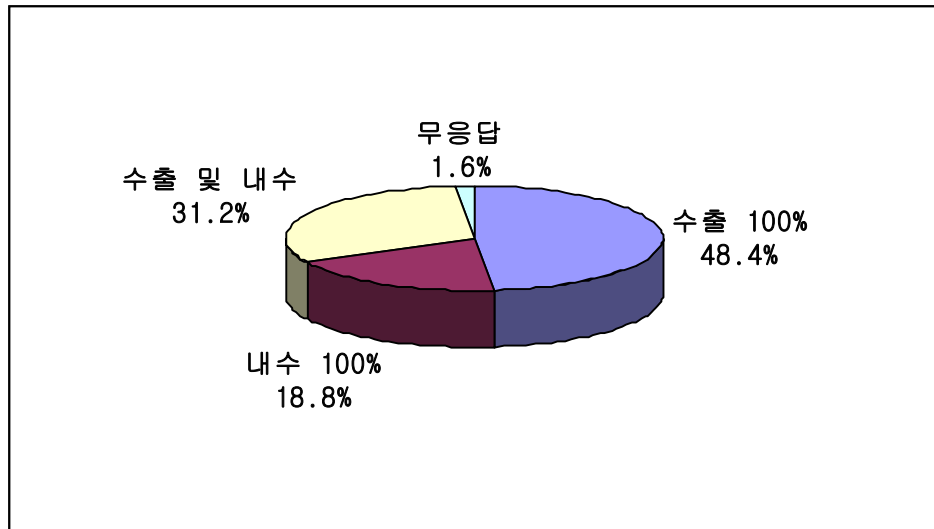
(단위 : 건)



□ 수출-내수 비율

- 수출 100% : 62건(48.4%)
- 내수 100% : 24건(18.8%)
- 수출 및 내수 : 40건(31.2%)
 - 수출>내수 18건
 - 수출=내수 5건
 - 수출<내수 17건
- 무응답 : 2개사(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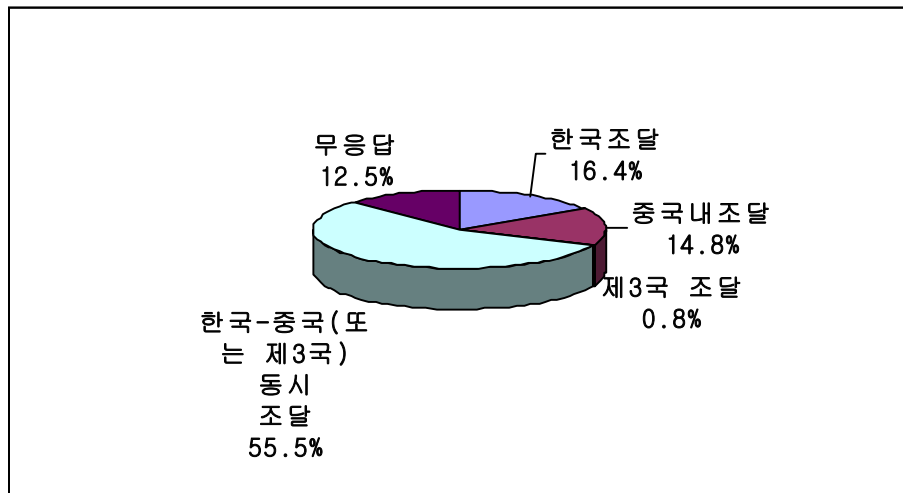
〈 수출-내수 비율 〉



□ 원자재 조달 비율

- 한국 조달 : 21건(16.4%)
- 중국내 조달 : 19건(14.8%)
- 제3국 조달 : 1건(0.8%)
- 한국-중국(또는 제3국) 동시 조달 : 71건(55.5%)
 - 한국 조달 20% 미만 : 12건
 - 한국 조달 20~50% 미만 : 14건
 - 한국 조달 50% : 11건
 - 한국 조달 50~80% 미만 : 23건
 - 한국 조달 80% 이상 : 3건
 - 기타 : 8건
- 무응답 : 16건(12.5%)

〈원자재 조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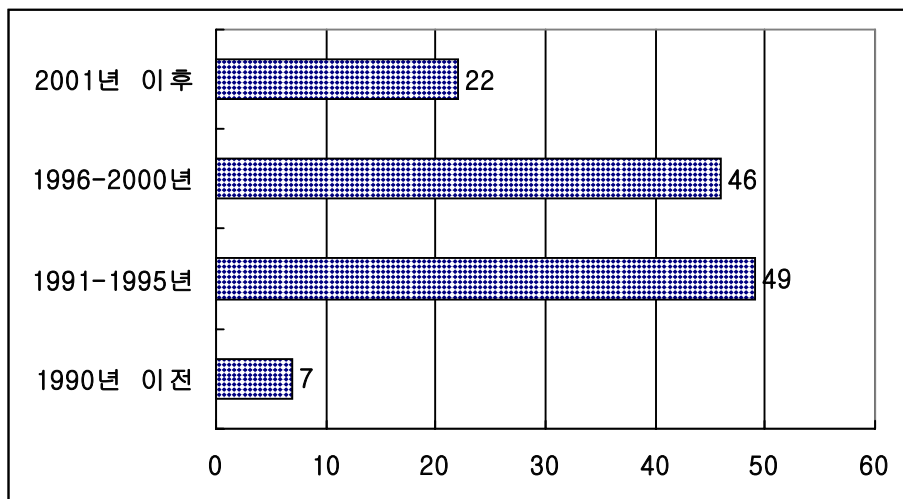


□ 투자진출 시기

- 1990년 이전 : 7건 (5.5%)
- 1991~1995년 : 49건(38.4%)
- 1996~2000년 : 46건(35.9%)
- 2001년 이후 : 22건(17.2%)
- 무응답 : 4건(3.1%)

〈투자진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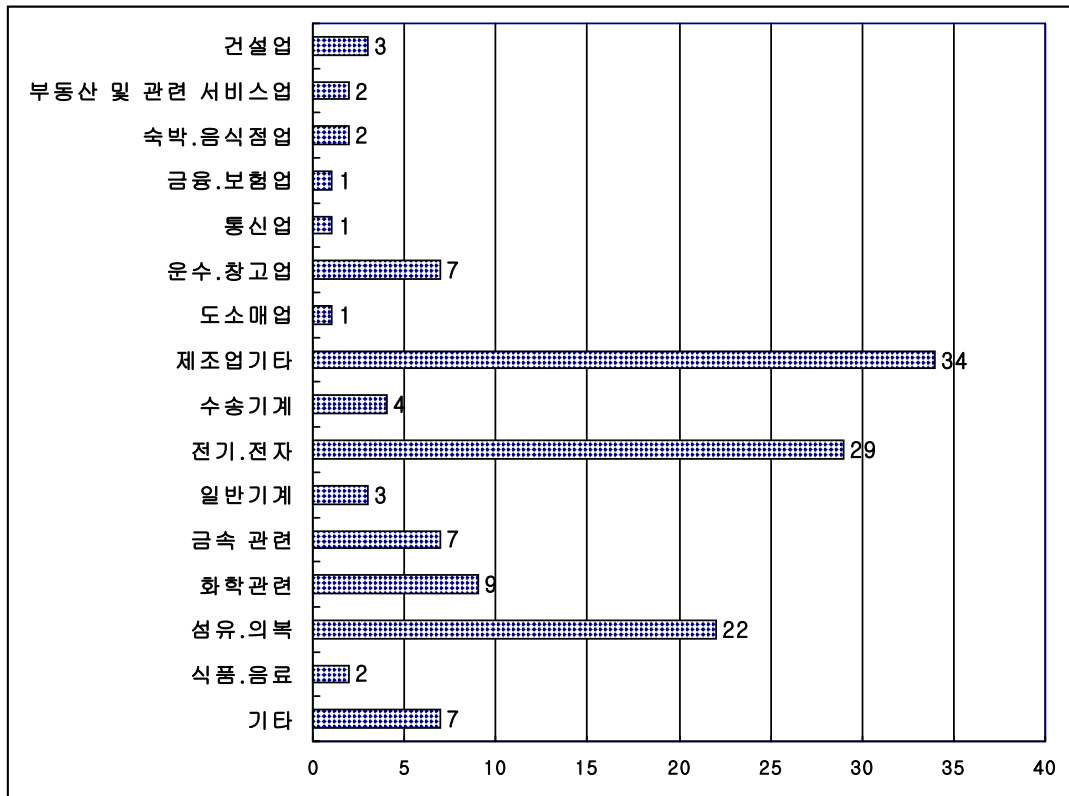
(단위 : 건)



□ 투자업종(복수응답)

〈 투자 업종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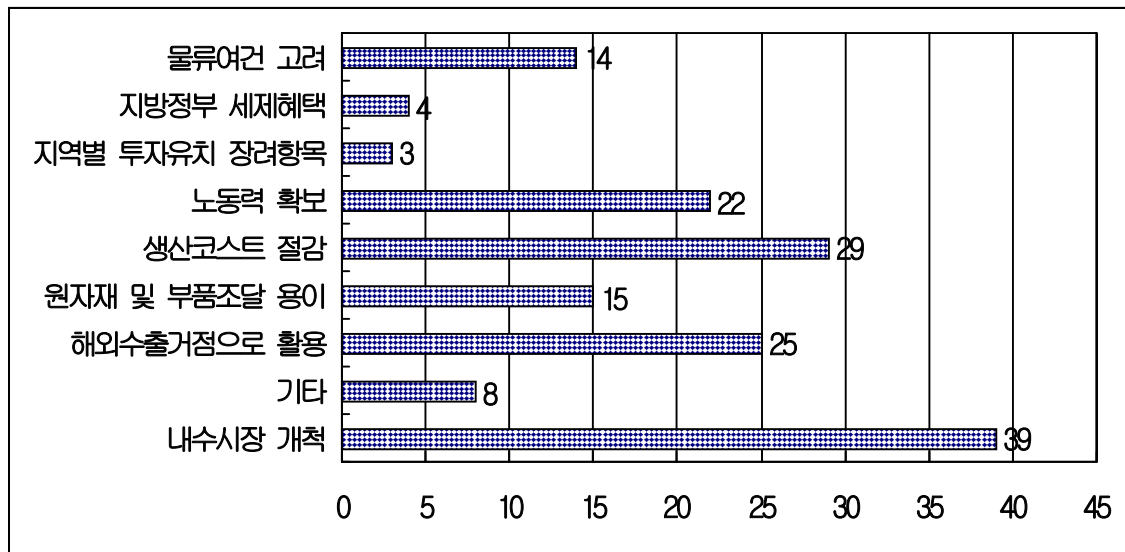
2 투자입지

□ 투자입지 선정시 고려 사항(복수응답)

- 내수시장 개척 : 39건(24.5%)
- 해외수출 거점으로 활용 : 25건(15.7%)
- 원자재 및 부품조달 용이 : 15건(9.4%)
- 생산코스트 절감 : 29건(18.2%)
- 노동력 확보 : 22건(13.9%)
- 지역별 투자유치 장려항목 : 3건(1.9%)
- 지방정부의 세제혜택 : 4건(2.5%)
- 물류여건 고려 : 14건(8.8%)
- 기 타 : 8건(5.1%)

〈투자입지 선정시 고려 사항〉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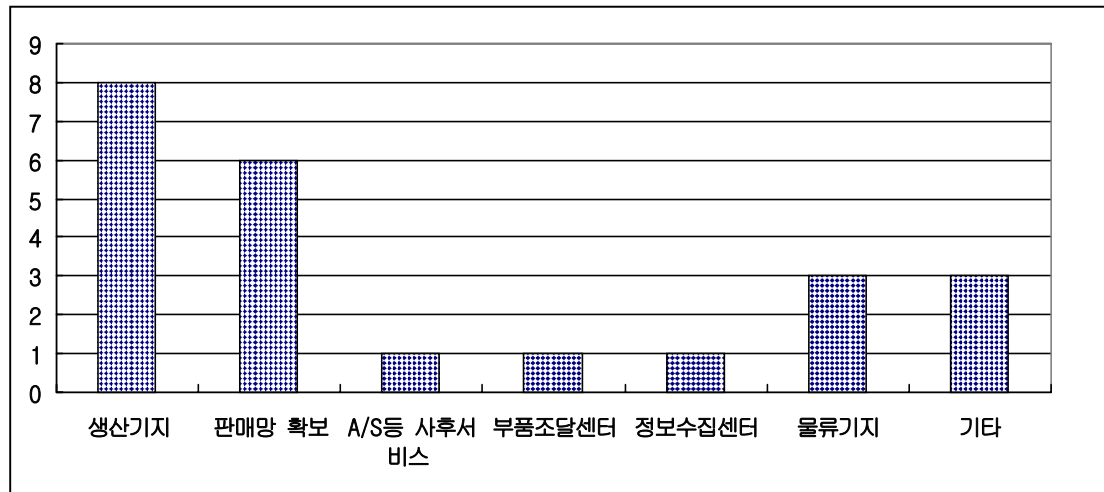
□ 지역별 주요 기능(장점)

○ 베이징, 텐진(복수응답)

- 생산기지 : 8건
- 판매망 확보 : 6건
- A/S 등 사후 서비스 제공 : 1건
- 부품조달센터 : 1건
- 정보수집센터 : 2건
- 물류기지 : 3건
- 기 타 : 3건

〈 베이징, 톈진-생산기지, 판매망 확보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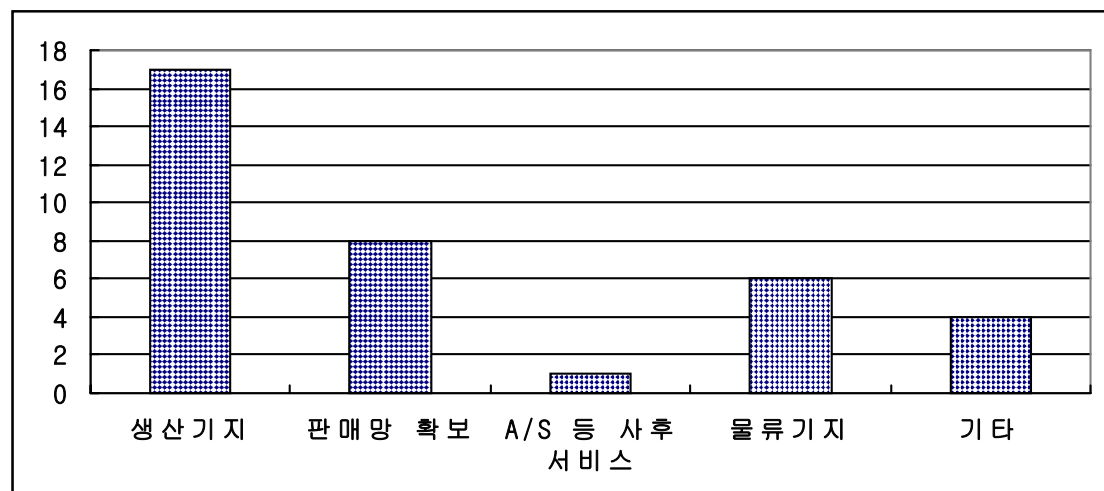


○ 상하이(복수응답)

- 생산기지 : 17건
- 판매망 확보 : 8건
- A/S 등 사후서비스 제공 : 1건
- 물류기지 : 6건
- 기타 : 4건(우수인재 확보 등)

〈 상하이-생산기지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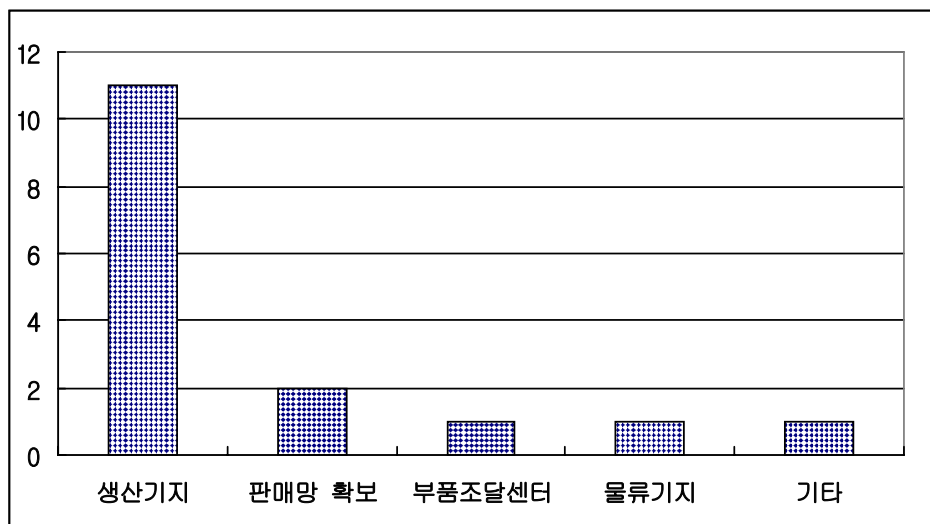


○ 동북3성

- 생산기지 : 11건
- 판매망 확보 : 2건
- 부품조달센터 : 1건
- 물류기지 : 1건
- 기타 : 4건
- 무응답 : 0건

〈 동북3성－생산기지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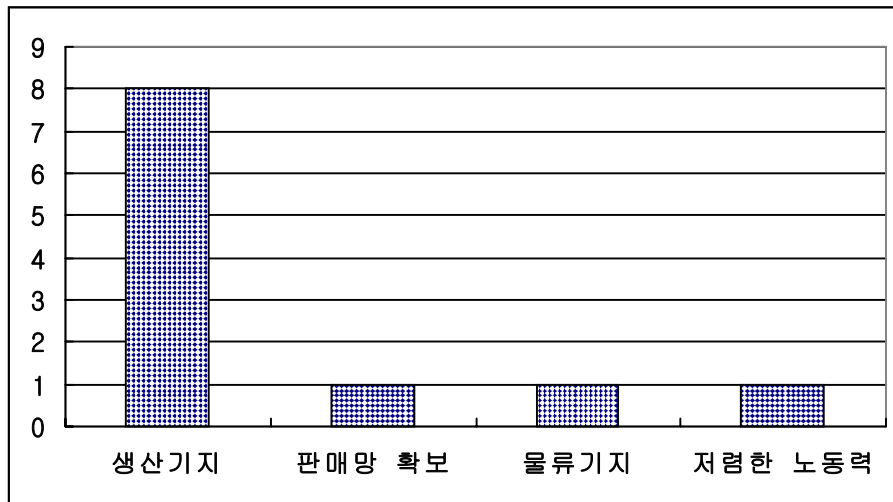


○ 산동성(복수응답)

- 생산기지 : 8건
- 판매망 확보 : 1건
- 물류기지 : 1건
- 기타(저렴한 노동력) : 1건

〈 산동성-생산기지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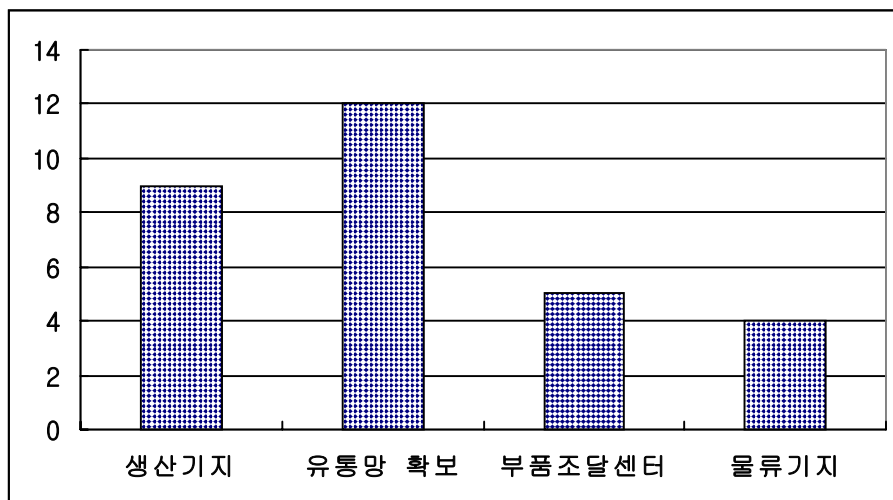


○ 광둥성(복수응답)

- 생산기지 : 9건
- 판매망 확보 : 12건
- 부품조달센터 : 5건
- 물류기지 : 4건

〈 광둥성-판매망 확보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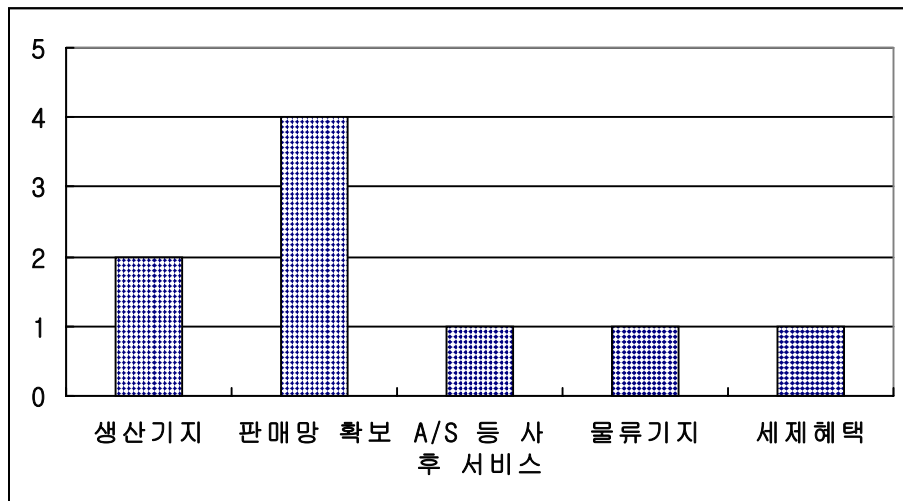


○ 청뚜, 우한(복수응답)

- 생산기지 : 2건
- 판매망 확보 : 4건
- A/S 등 사후서비스 제공 : 1건
- 물류기지 : 1건
- 기타 : 1건(세제혜택)

〈 청뚜, 우한-판매망 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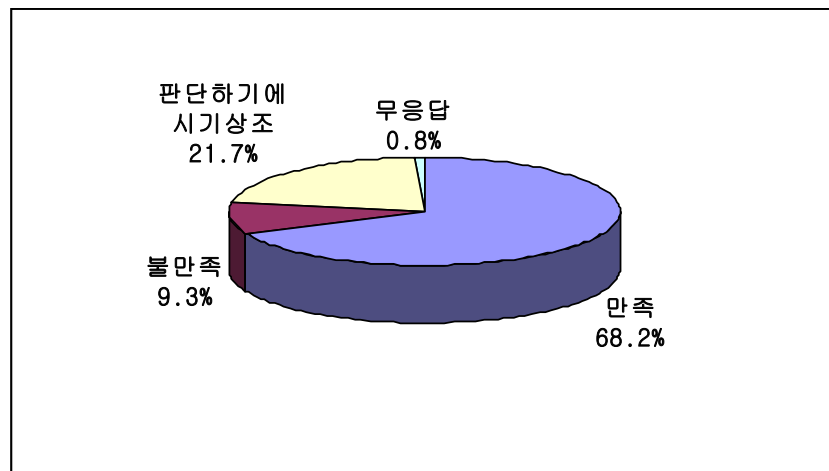
(단위 : 건)



□ 투자입지 결정에 대한 만족도(복수응답)

- 만족 : 88건(68.2%)
- 불만족 : 12건(9.3%)
- 판단하기에 시기상조 : 28건(21.7%)
- 무응답 : 1개사(0.8%)

〈투자입지 결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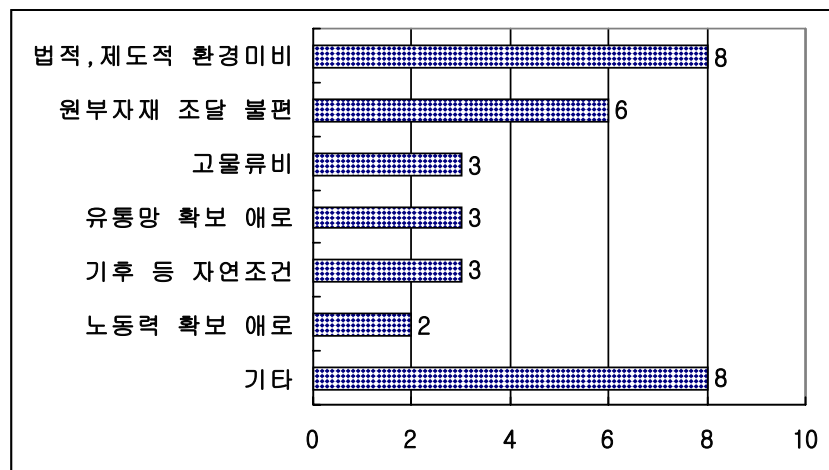


□ 투자입지 결정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

- 법적, 제도적 환경 미비 : 8개사
- 원부자재 조달 불편 : 6개사
- 고물류비 : 3개사
- 유통망 확보 애로 : 3개사
- 기후 등 자연조건 : 3개사
- 노동력 확보 애로 : 2개사
- 기타 : 8개사

〈투자입지 결정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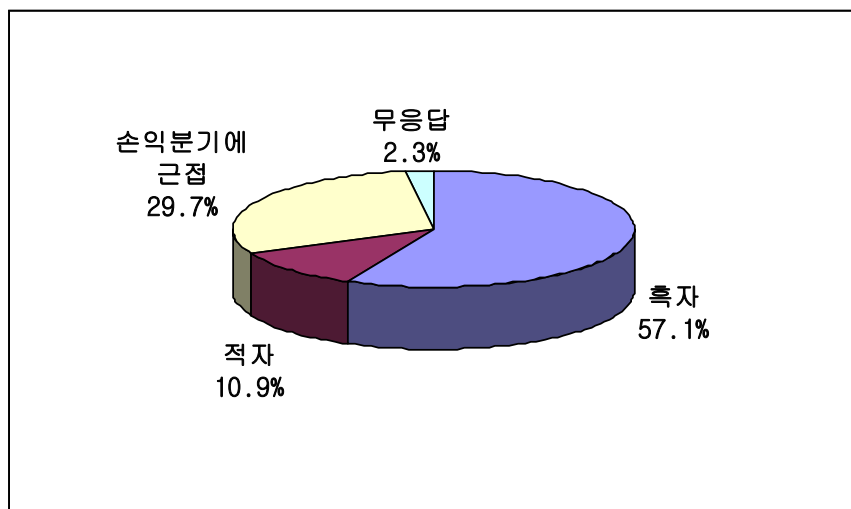


3 경영현황

□ 경영상태

- 흑자 : 73건(57.1%)
- 적자 : 14건(10.9%)
- 손익분기에 근접 : 38개사(29.7%)
- 무응답 : 3건(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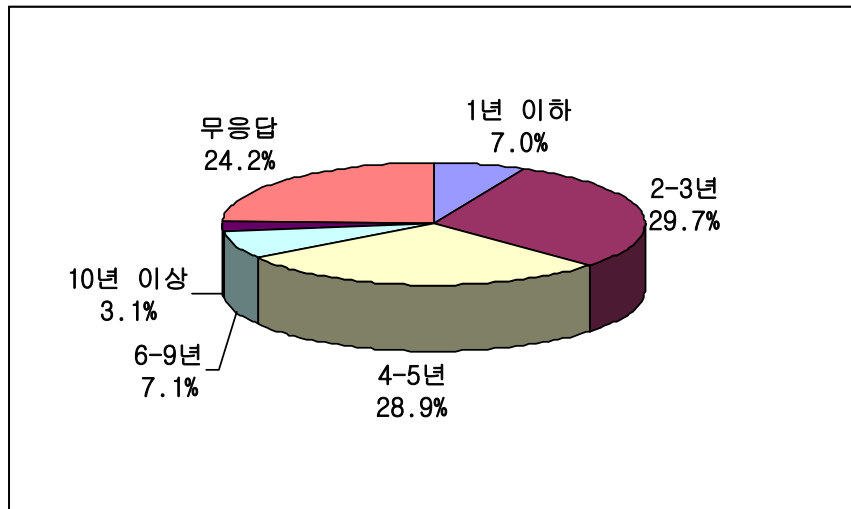
〈 경영상태 〉



□ 현재 흑자인 경우, 손익분기 시점

- 투자후 1년 이하 : 9건(7.0%)
- 2~3년 : 38건(29.7%)
- 4~5년 : 37건(28.9%)
- 6~9년 : 9건(7.1%)
- 10년 이상 : 4건(3.1%)
- 무응답 : 31건(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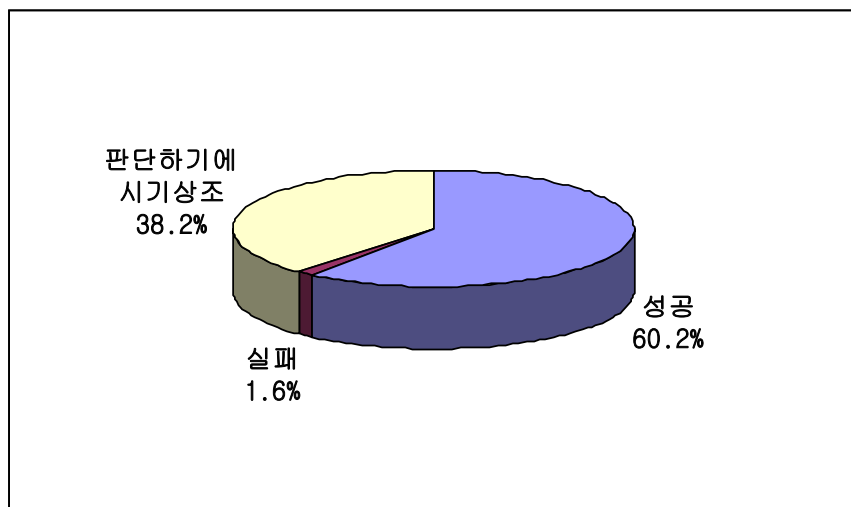
〈손익분기 시점〉



□ 중국투자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성공 : 77건(60.2%)
- 실패 : 2건(1.6%)
- 판단하기에 시기상조 : 49건(38.2%)

〈중국투자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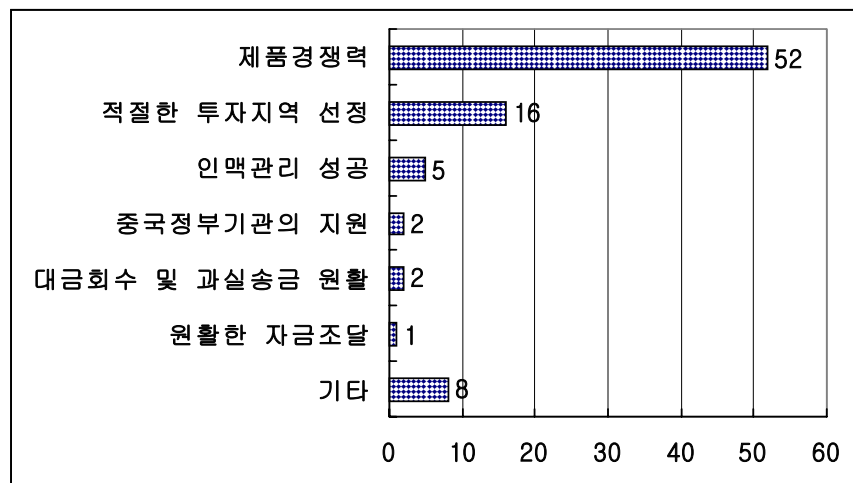


□ 중국투자 성공 원인(복수응답)

- 제품경쟁력 : 52건(60.5%)
- 적절한 투자지역 선정 : 16건(18.6%)
- 인맥관리 성공 : 5건(5.8%)
- 중국 정부기관의 지원 : 2건(2.3%)
- 대금회수 및 과실송금 원활 : 2건(2.3%)
- 원활한 자금 조달 : 1건(1.2%)
- 기타 : 8건(9.3%)

〈중국투자 성공 원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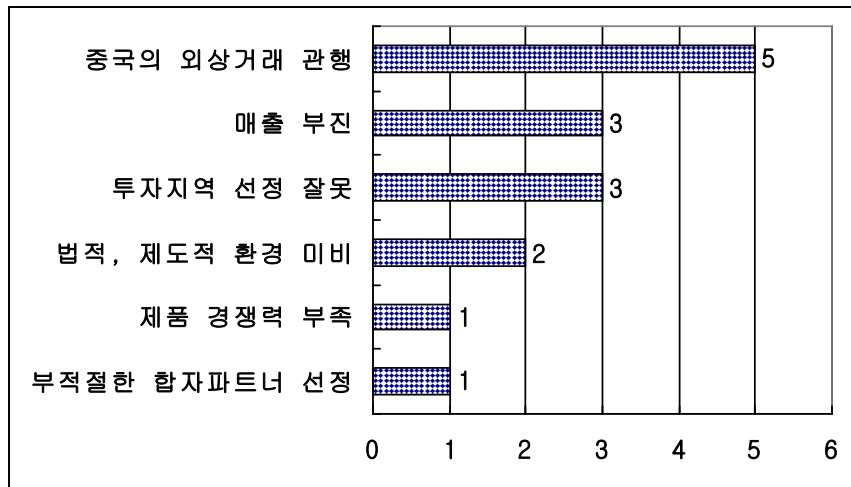


□ 중국투자 실패 원인(복수응답)

- 중국의 외상거래 관행 : 5건
- 투자지역 선정 잘못 : 3건
- 매출부진 : 3건
- 법적, 제도적 환경 미비 : 2건
- 제품 경쟁력(품질, 가격, 디자인) 부족 : 1건
- 부적절한 합자 파트너 선정 : 1건

〈중국투자 실패원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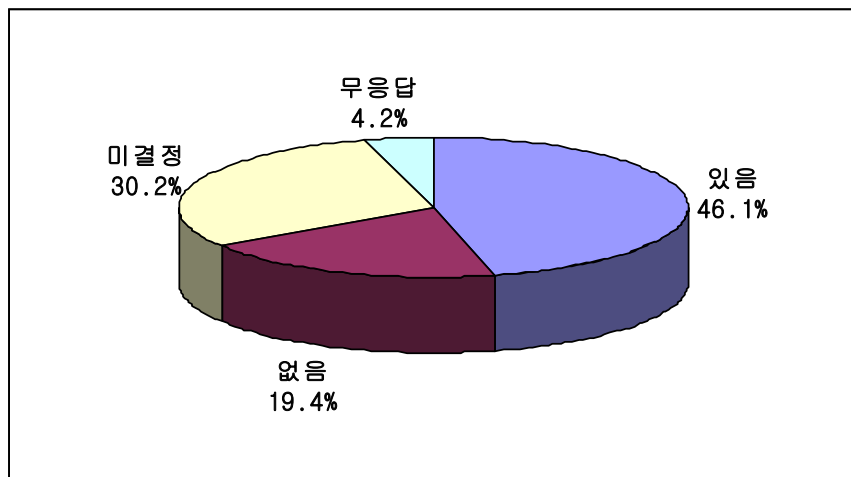


4 재(확대)투자

□ 재(확대)투자 의향(복수응답)

- 있음 : 64건(46.1%)
- 없음 : 27건(19.4%)
- 미결정 : 42건(30.2%)
- 무응답 : 6건(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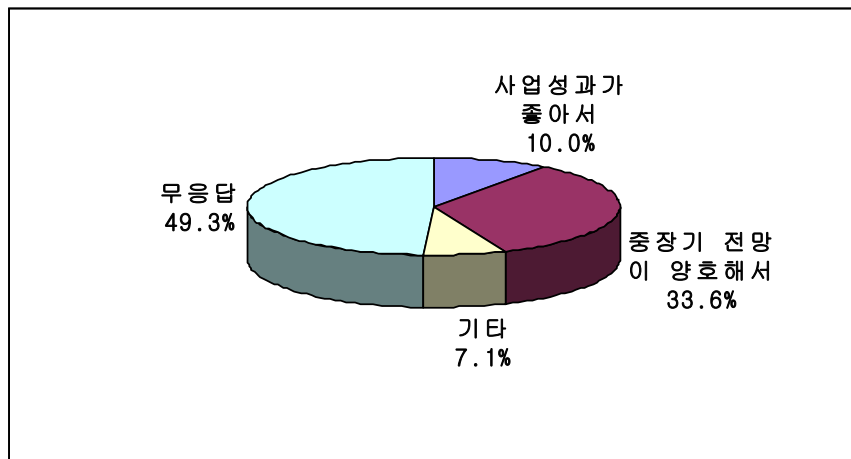
〈재투자 의향〉



□ 재(확대)투자 이유(복수응답)

- 사업성과가 좋아서 : 14건(10.0%)
- 중장기 전망이 양호해서 : 47건(33.6%)
- 기타 : 10건(7.1%)
- 무응답 : 69건(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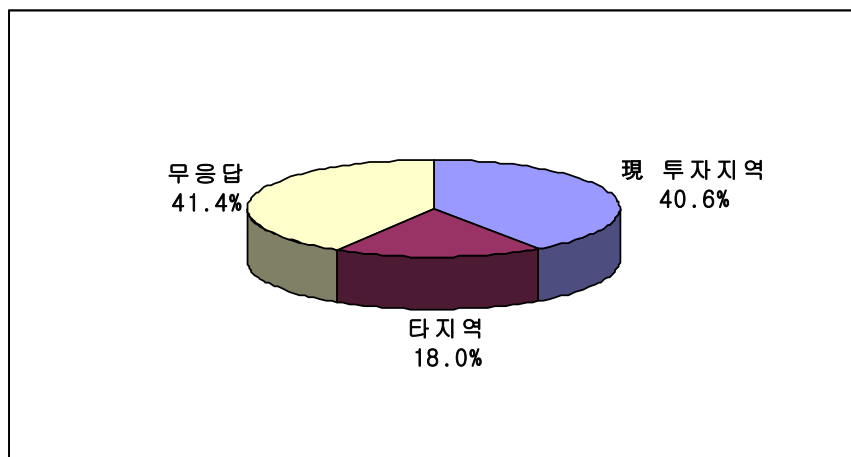
〈 재투자 이유 〉



□ 재(확대)투자 대상지역

- 現 투자지역과 동일 : 52건(40.6%)
- 타 지역 : 23건(18.0%)
- 무응답 : 53건(41.4%)

〈 재(확대)투자 대상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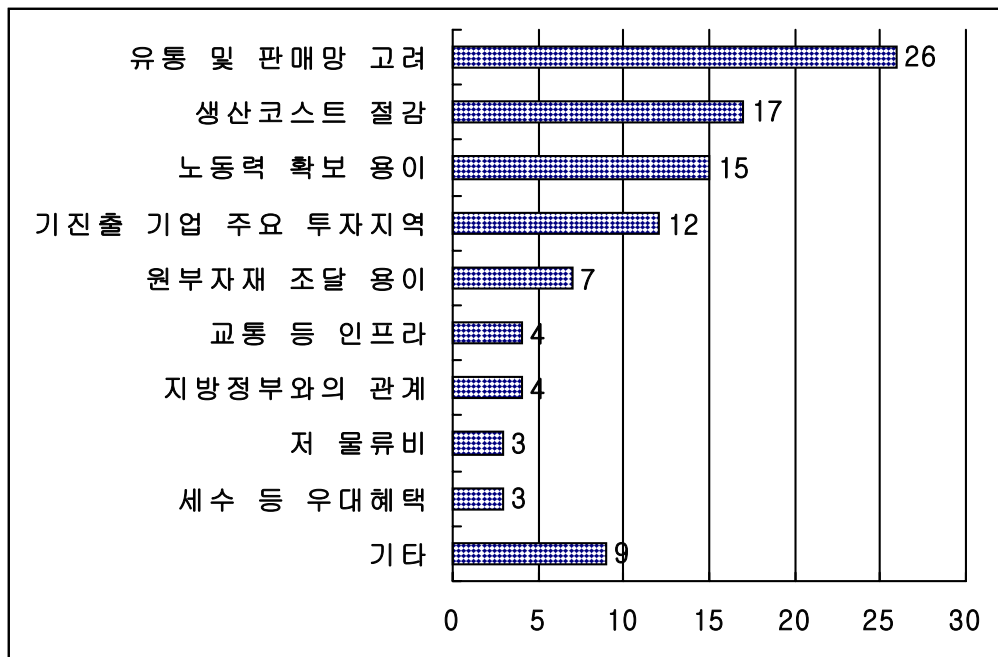


□ 재(확대)투자지역 선정이유(복수응답)

- 유통 및 판매망 고려 : 26건(26.0%)
- 생산코스트 절감 : 17건(17.0%)
- 노동력 확보 용이 : 15건(15.0%)
- 기진출 한국 및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지역 : 12건(12.0%)
- 원부자재 조달 용이 : 7건(7.0%)
- 교통 등 인프라 : 4건(4.0%)
- 지방정부와의 관계 : 4건(4.0%)
- 저 물류비 : 3건(3.0%)
- 세수 등 우대혜택 : 3건(3.0%)
- 기타 : 9건(9.0%)

〈재투자 지역 선정 이유〉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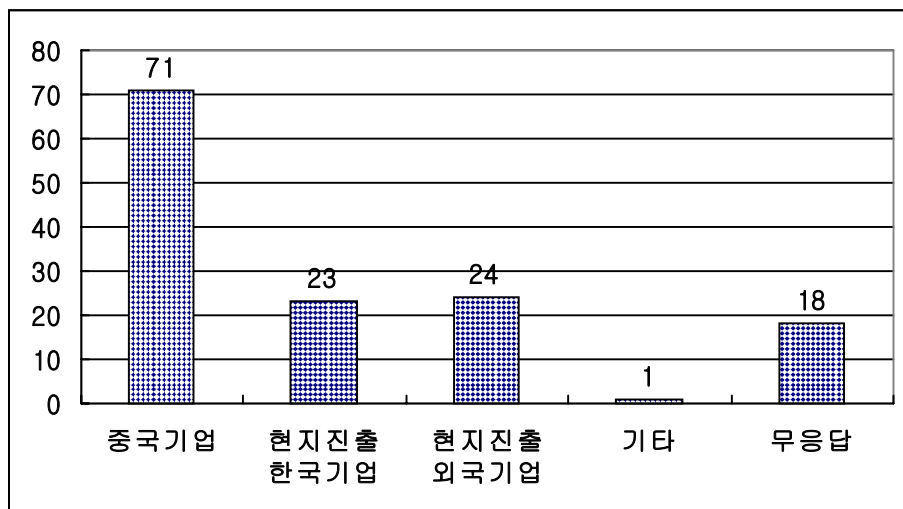
5 경쟁동향

□ 경쟁상대(복수응답)

- 중국기업 : 71건(51.8%)
- 현지진출 한국기업 : 23건(16.8%)
- 현지진출 외국기업 : 24건(17.5%)
- 기타 : 1건(0.7%)
- 무응답 : 18건(13.2%)

〈 경쟁 상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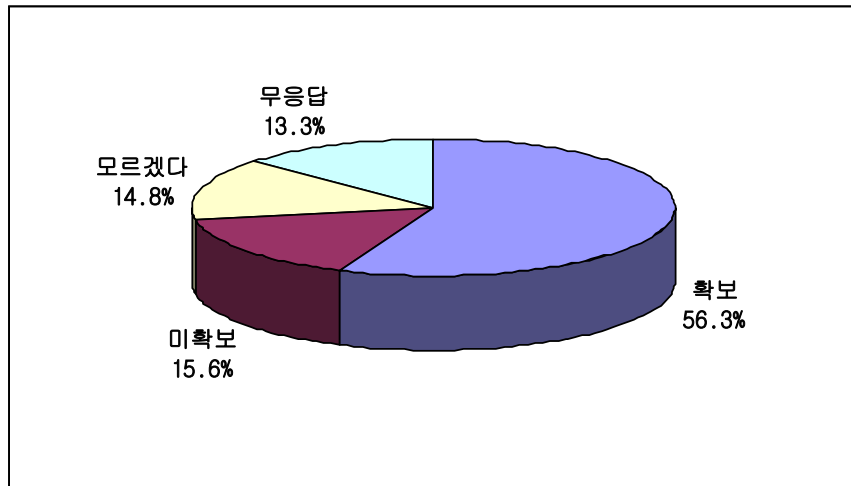
(단위 : 건)



□ 경쟁사에 대해 경쟁우위 확보여부

- 확보 : 72건(56.3%)
- 미확보 : 20건(15.6%)
- 모르겠다 : 19건(14.8%)
- 무응답 : 17건(13.3%)

〈 경쟁우위 확보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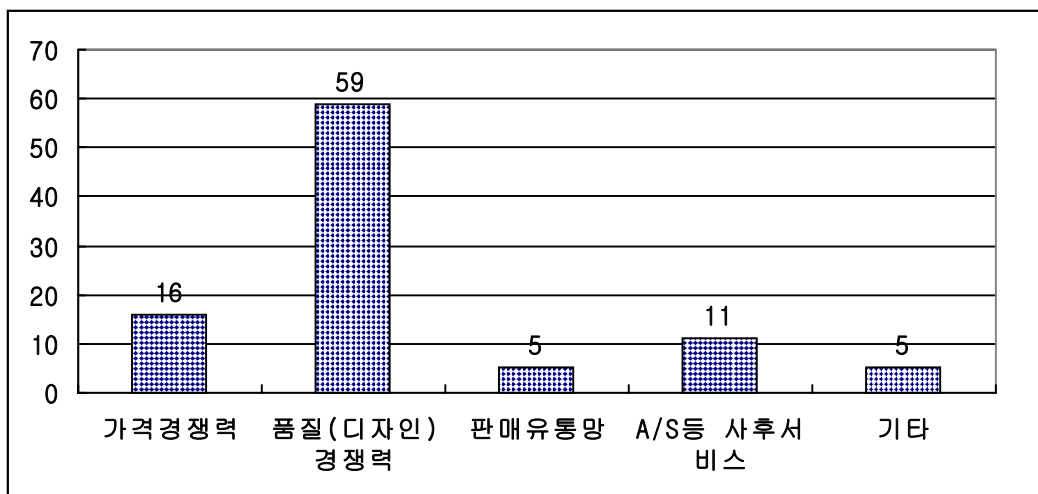


□ 경쟁우위 요인(복수응답)

- 가격 경쟁력 : 16건(11.0%)
- 품질(디자인) 경쟁력 : 59건(40.5%)
- 판매유통망 : 5건(3.4%)
- A/S등 사후서비스 : 11건(7.5%)
- 기타 : 5건(3.4%)
- 무응답 : 50건(34.2%)

〈 경쟁우위 요인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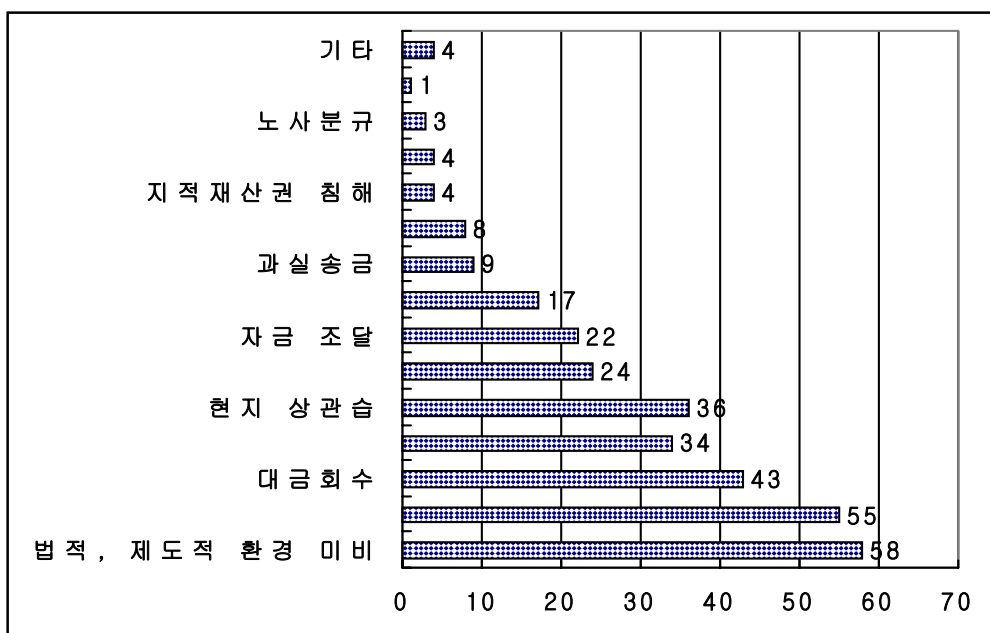
6 애로사항

□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

- 법적, 제도적 환경 미비 : 58건(18.0%)
- 통관 및 세무 : 55건(17.1%)
- 대금회수 : 43건(13.4%)
- 언어장벽 : 34건(10.6%)
- 현지 상관습 : 36건(11.2%)
-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미비 : 24건(7.5%)
- 자금조달 : 22건(6.8%)
- 인맥관리 : 17건(5.3%)
- 과실송금 : 9건(2.8%)
- 중국내 업체간 담합 : 8건(2.5%)
- 지적재산권 침해 : 4건(1.2%)
- 현지 지방정부와의 불화 : 4건(1.2%)
- 노사분규 : 3건(0.9%)
- 기 타 : 4건(1.2%)
- 정치불안 : 1건(0.3%)

〈 경영상 애로사항 〉

(단위 : 건)



7 WTO 가입 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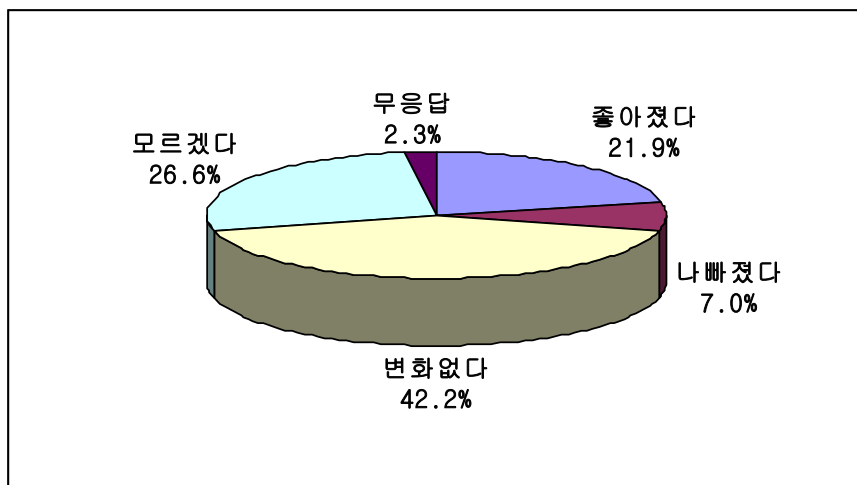
□ 중국의 WTO 가입 후 법적, 제도적 환경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건)

- 좋아졌다 : 28건(21.9%)
- 나빠졌다 : 9건(7.0%)
- 변화없다 : 54건(42.2%)
- 모르겠다 : 34건(26.6%)
- 무응답 : 3건(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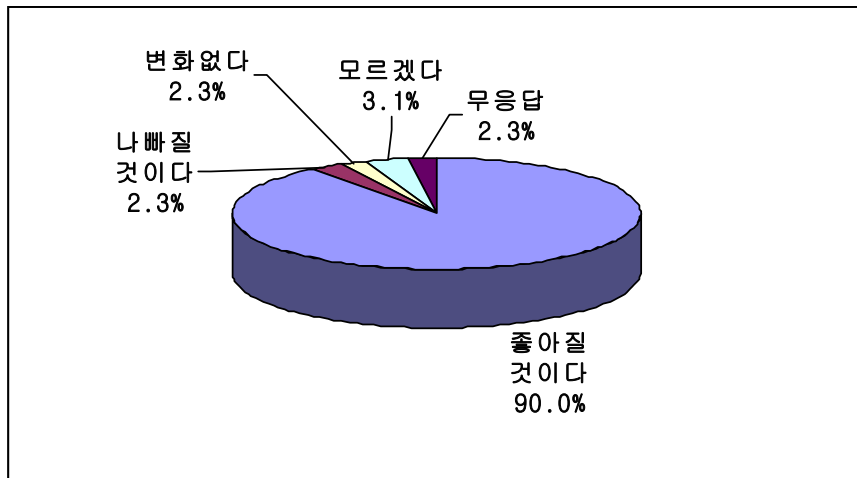
〈중국의 WTO 가입후 변화〉



□ 향후 전망

- 좋아질 것이다 : 115건(90.0%)
- 나빠질 것이다 : 3건(2.3%)
- 변화없다 : 3건(2.3%)
- 모르겠다 : 4건(3.1%)
- 무응답 : 3건(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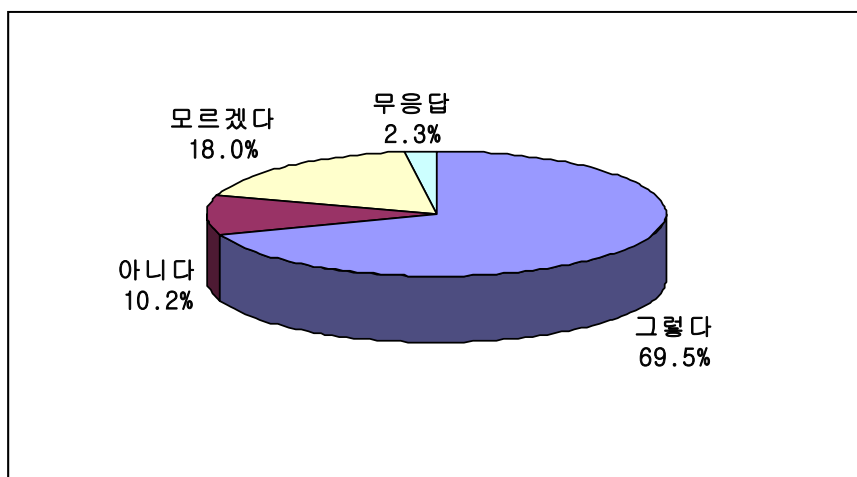
〈중국내 경영환경 전망〉



□ 관세인하 및 시장 개방 일정 준수 전망

- 그렇다 : 89건(69.5%)
- 아니다 : 13건(10.2%)
- 모르겠다 : 23건(18.0%)
- 무응답 : 3건(2.3%)

〈시장 개방 일정 준수 전망〉



광저우 등 5개 도시, 외국은행 위안화 영업 허가

KOTRA 상하이 무역관

중국인민은행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칭다오(靑島), 난징(南京), 우한(武漢) 등 5개 도시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에 설립된 외국계은행은 12월 1일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위안화 영업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후 외국계은행의 외환업무 고객제한을 취소했으며 상하이, 선전, 톈진, 다롄 소재 은행에 대해 위안화 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은행의 자본구조 개선, 국제금융유입 확대 및 자금교역시장의 규범화 등을 통해 중국계 은행의 업무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2년 9월 현재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기구는 181개에 달하며 이 중 41개 은행이 위안화 영업허가를 취득했다. 외국계은행의 위안화 자산총액은 477.97억 위안(57억 8천만 달러), 대출총액은 385억 위안(46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자료원 : 東方網(2002. 11. 19)

중국 소매유통업 7대 발전추세 전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2001년 기준 중국 소비품 매출 총액은 3조 7,595억 위안(약 4,54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무역시장국 디젠카이(邸建凱) 부국장이 예측한 중국 소매업 7대 발전추세를 알아본다.

▶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시장 주도권 이전

올 하반기 주요 상품 600여 종의 88%가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중국경제는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가격결정요인으로 생산단계보다 판매단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체인점의 비중 확대

10·5 계획(제 10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 말경 체인경영기업의 매출액은 약 7,000억 위안(약 845.7억 달러; 평균 35% 증가) 규모로 도소매업/요식업 매출 총액의 약 20%에 달할 전망이다.

▶ 기업 재편 확대

기업간 제휴, 인수 및 합병 등이 가속화될 것이며 기업재편을 통한 소매업 규모 확대 및 경쟁력 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업종간 경쟁 치열

전통적인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쇼핑몰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 물류산업 발전

새로운 소매업의 확대 발전은 낙후된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을 자극할 것이며 물류산업 또한 새로운 신흥산업으로 대두될 것이다.

▶ 전문기술, 정보기술의 응용

소매영역은 전문기술 및 정보기술의 응용으로 경영기술과 관리방법이 날로 현대화되고 있으며 향후 품목관리, POS 시스템전자라벨 및 도난방지 시스템 등 IT를 활용한 현대적인 관리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이다.

▶ 외자진출 가속화

외자진출의 확대에 따라, 소매업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외자기업 설립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소매업은 외상독자, 중외합자 등 다양한 기업형태가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中新社

中, 외자기업의 상장社 인수합병 확대 허용

KOTRA 베이징 무역관

중국증감위, 재정부, 국가경무위가 공동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 관련 통보>에 따라 그동안 법으로 묶여있던 중국내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의 대외 양도가 개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보는 해외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 자금의 도입, 경제구조 조정 추진, 상장회사의 관리체제 구조 개선,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중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은 '국유→민간' 전환방식에 그쳤다. 중국내 민간기업의 한계로 상장회사의 국유주 비중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외국인투자가 중국증시에 참여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가 다원화되고 관리체제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新 외자 인수합병 규정의 5대 포인트

▶ 신용 및 역량을 보유한 외자기업에 제한

통보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인수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비교적 강한 경영관리 능력과 자금실력, 양호한 재무상황 및 신용 외에, 상장회사의 관리체제 개선 및 지속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신용 및 경영관리 수준이 낮은 외자기업은 여전히 상장회사의 주식 인수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중국 증권시장의 발전과 중소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장질서에 따른 주식가격 책정

"양도 방식은 원칙상 공개 경매방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양도는 국유자산의 유실방지를 전제로 주로 당사자간 협의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양도가격 관련 공개 경매방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격체제의 시장화를 도입하였다.

▶ 주식 인수후 최소 소지기한 1년

"외국인투자자는 주식 인수 후 1년이 지난 후 소유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자기업의 중장기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의 소유주식 재양도시 주식 인수자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외국인 소유주식은 비유통 주식으로 증권거래소에서의 공개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 외자주식 내국민 대우 부여

통보의 9조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주식 양도 후 상장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상장회사는 주식지분을 물론하고 외자기업의 우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주식 양도 후 1년이 지나면 재양도가 가능해 세율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 상장회사의 경우 기타 일반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자금조달 및 주가상승 등의 메리트가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별 제한

"양도시 반드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중국측 통제 또는 상대 통제의 경우, 양도 후 중국측의 통제 지위를 지속 확보해야 한다."(2조)고 규정했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식품가공업 중 황주, 백주의 생산, 방직업의 모방, 면방 및 일반 기계제조업의 컨테이너 생산 등은 외국인투자 제한산업으로 외국인투자의 주식 지분율을 통제하며 전선망 건설 및 경영, 교육문화 예술 및 TV 방송 영화 등은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이다.

《참고》 관련 법규의 연혁

1995년 9월 ▷ 국무원(國辦發 1995 48호) "국가의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관리방법 발표 전까지 모든 회사는 외국인에게 관련주를 양도하지 못한다."

1999년 8월 ▷ 국가경무위가 제정 발표한 <외국인의 국유기업 인수 관련 잠정규정>은 외국인이 국유기업의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001년 11월 ▷ 외경무부와 증감위가 공동 발표한 <상장회사의 외국인투자 관련 약간의 의견>에서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A주 또는 B주 발행을 허용함과 동시에 외자기업의 상장회사 비유통 주식의 양수 관련 원칙적인 규정을 제정함.

2001년 11월 ▷ 외경무부와 공상관리총국이 공동 발표한 <외상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의 결정>은 외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 관련 원칙적인 규정을 제정함

2002년 2월 ▷ 국무원 346호령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 국가계획위원회, 국가 경무위 및 외경무부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공동 발표 2002. 4. 1일부 시행

<목록>은 기존과 비교해 △장려산업 증가 △은행, 보험, 상업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확대 △일반 공업산업이 허용류에 포함 △서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의 주식지분 및 산업제한 완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2002년 6월 ▷ <외자참여 증권회사의 설립규칙>, <외자참여 기금관리회사의 설립규칙> 발표

2002년 10월 ▷ <상장회사의 인수 관리방법> 발표

자료원 : 상해증권보

전문가 논단

한중수교 10주년을 계기로 본 ‘Made in China’의 부상과 한국의 선택

KDI 박정동 연구위원

1. 서론

중국은 1983년 10월 GATT의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고 1986년에 GATT(WTO의 전신) 가입신청을 제출함으로써 WTO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과의 입장차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WTO 가입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후 2000년 5월 유럽연합과 쌍무협상 타결, 2001년 7월 초 제네바 WTO 가입 협상 작업반회의에서의 간존 쟁점사안 타결 등으로 2001년 11월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경제규모도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0년경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우리 나라와 같이 중국과 무역 및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근린 국가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차이나 쇼크, 중국 위협론 등이 대두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대국의 출현에 대하여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WTO 가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것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 제기이다. 즉,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한중간의 산업경쟁력 분석을 통해 WTO에의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의 산업화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우리의 비교우위영역을 얼마나 빨리 잠식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중국의 대약진

중국은 1978년 개최된 제1기 당중앙위원회 제3총회(11기 3중총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계속 혁명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부정하고, 당의 활동 중점과 전국 인민의 활력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이행시킨다」고 선언했다. 이후 개혁·개방노선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역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 각 영역에의 적용, 이론적인 정비를 거치면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해왔다. 이는 그 때까지 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운 정도로 유연하면서도 대담한 전환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20여 년의 업적은 대대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국력의 약진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2년간 국내총생산(GDP)은 3,624억 원(元)에서 8조 2,054억 원(元)으로 급증하였다.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9.6%에 달한다. 1인당 GDP 역시 1979년 379원(元)에서 1999년에는 6,534원(元)으로 17.2배나 증가했다

직원·노동자의 평균임금도 1978년에는 615원(元)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8,346원(元)으로 13.6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간의 중국의 국민생활 즉, 수입·소비 수준, 저축, 주택, 교통, 문화, 교육, 위생 등 각 방면에서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내구 소비재의 보급을 역시 지난 세월 동안 대단히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신사종의 신기(新四種의 神器)’로 불리워졌던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녹음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컬러 TV의 경우 1985년에는 도시가정 100 가구당 17.21대를 보유하고 있던 데 비해, 1999년에는 111.57대를 보유하고 있다. 냉장고 역시 1985년에는 6.58대였던 것이, 77.74대로 세탁기도 48.2대에서 91.44대로 증가했다.

대외 경제 교류도 급속히 진전되어, 무역 및 외자이용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978년의 수출입총액은 20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9

년에는 이것이 3,606.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1979~1999년 기간 중 외자이용실적은 4416.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1980년 이후 연평균 9.6%라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대단히 높아졌다.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 2000」에 의하면, 1998년의 시점에서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중국의 GNP는 3조 7790억 달러로 세계 제2위이다. 참고로 1위인 미국은 7조 9040억 달러, 3위인 일본은 2조 9820억 달러이다.¹⁾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약진은 중국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99년 기준 4천 200개 품목가운데 시장점유율이 1위인 것은 460개나 된다. 1~5위 안에 드는 품목도 무려 1,428개나 된다. 이처럼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은 미국시장에서 1990년 3.1%이었던 점유율을 1998년에는 8.0%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5.0%에서 13.2%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의 고도성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관료의 부패, 지역격차의 확대, 對中직접투자의 감소, 심각한 실업문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국유기업의 적자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국유기업의 적자 문제는 국유기업개혁, 행정개혁, 금융개혁의 3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단히 중대하면서도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중국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나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더하여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에 대한 외부압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의 장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하지만 환율환산방식에 의하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중국은 세계 제 7위이다.

3. WTO 시대의 중국경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중국의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은 그 동안 추진해온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성공적 결과이자 가시적인 성과지표로서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무역면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시장개방 확대일 것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더욱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99년 현재 22%에서 2004년까지 17%로 인하될 전망이며 미국산 주요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14.5%로 인하될 전망이다.²⁾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이 폐지되며 밀수입 쿼터의 경우 1999년 730만 톤에서 2004년 930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EU와의 협상에서 올리브, 와인, 버터, 파스타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큰 폭의 관세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³⁾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도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요컨대, 농산물부문에 중국이 기존에 고수하던 고관세, 수량규제, 비과학적 위생·검역기준에서 탈피하여 동 부문에 대한 수량제한이 완화되고 농산물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수준(1999년에서 2004년까지)은 쇠고기가 45%에서 12%, 돼지고기 20%에서 12%, 닭고기 20%에서 10%, 감귤류 40%에서 12%, 포도 40%에서 13%, 사과 30%에서 10%, 아몬드 30%에서 10%, 포도주 65%에서 12%, 치즈 50%에서 12%, 아이스크림 45%에서 19% 등으로 예상된다.<http://www.uschina.org>

3) EU 관심품목의 관세도 향후 포도유 85%에서 9%, 파스타 25%에서 15%, 버터 30%에서 10%, 밀크 파우더 25%에서 10%, 만다린 40%에서 12%, 와인 65%에서 14%, 올리브 25%에서 10%, 밀가루 전분 30%에서 18% 등으로 인하될 전망이다.<http://europa.eu.int>

이러한 변화는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보호장벽도 크게 낮아질 것인데 중국과 미국의 주요협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제조업 평균 관세율 17%(1999년)을 2005년까지 9.44%로 낮추어야 한다(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2005년까지 4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특히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등의 첨단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아예 관세를 없애야 하며 자동차 및 주요부품의 수입관세는 2005년까지 25%,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중국은 관광, 정보통신, 보험, 금융, 건설, 영상음향, 전문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약속하였다. 특히 유통 부문에 대한 약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유통부문이 창출하게 될 투명성과, 정부 수준에서 유통부문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장벽 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상품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시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향후 개선안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수준과 같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중국도 WTO 가입으로 타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중국은 과거 직물 및 의류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협정국들 사이에 진행된 쿼터 증대에 관한 합의사항으로부터 큰 혜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쿼터의 점진적 철폐로 인해 직물 및 의류부문에서 중국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대변동을 겪게 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단기적으로는 기회와 위기의 틈바구니 속에서 적지 않은 시련도 감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국제경쟁과 시장원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장기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WTO에의

가입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즉, 세계 기준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GDP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도 새로운 모멘텀을 획득할 것이다. 산업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WTO에의 가입으로 경쟁에 따른 진입/퇴출 원리와 함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산업이 재편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집약적 혹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은 각 부문별로 경영여건 악화와 구조 고도화라는 양면의 성향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또, 경제의 세계화와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내 전통적인 경영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압력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래지향적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의견교환이 용이한 수평적 경영 메커니즘이 필수적인데, 이에 반해 중국 대부분의 경영 메커니즘은 피라미드 계층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영체제는 향후 '신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 WTO 가입으로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 가속화로 경영 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 및 경영관리 메커니즘은 직접적인 개입형태에서 간접적인 관리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4. 한·중간 산업경쟁력 분석

그러면 중국의 변화가 한국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중국의 WTO의 가입, 그리고 이로 인한 관세인하가 한·중간의 수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시 2005년까지 중국수출은 1998년 대비 10.1~12.2% 증가, 수입은 11.9~14.3%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수출 및 수입은 중국의 증가액의 3.2%, 수입 증가액의 12.1%~13.3%만큼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즉 중국의 WTO에의 가입이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2000~2005년 누계액 기준으로 볼 때 22.2~24.3억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 ② 한국은행은 중국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후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동안 중국의 수입증가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한국 수출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적용하여 중국의 WTO에의 가입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액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WTO 가입시 2000~2005년 중 6년동안 중국의 총수입액은 총 26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6년동안 27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 ③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WTO 가입후 평균관세율이 1995년의 약 36.0%에서 1995년 기준 ASEAN 평균관세율 수준인 15%, 이보다 낮은 10%, 또는 이보다 높은 19% 등 3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32.1~55.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시 한국의 對중국 수입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조정관세 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입증가효과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를 합산할 경우 한국의 對중국 수입은 2005년까지 6년간 약 3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는 2000~2005년중 6년간 24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정결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16.4~17.3억 달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0~17억 달러 보다 다소 큰 수치이다.

<표 1> 중국의 WTO에의 가입이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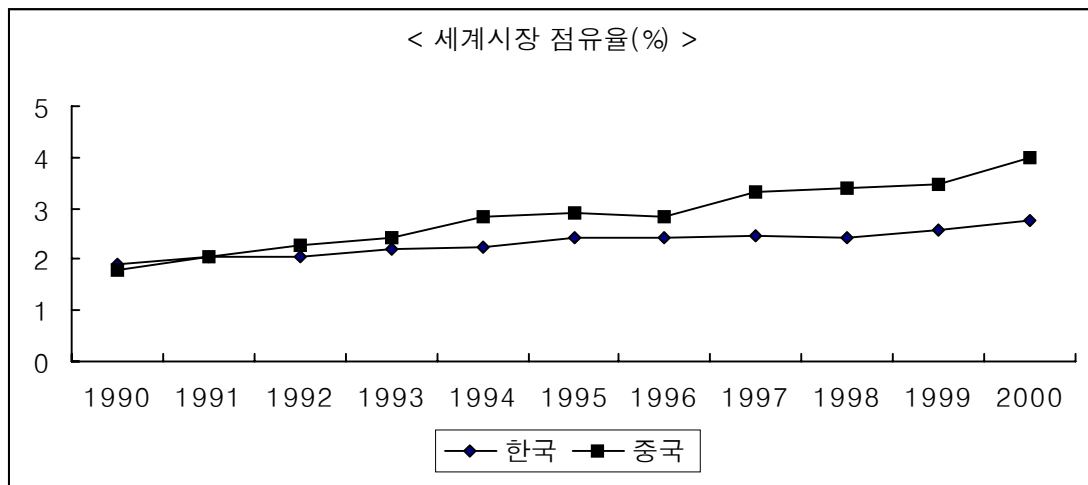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수 출	수 입	수출입차
한국은행	27	3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2.1~55.5	21~38	11.1~17.8
미국국제무역위원회	22.2~24.3	5.8~7.0	16.4~17.3

주: 1) 2000~2005년 중 누계액 기준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이 제3국 시장에 있어서 한·중간 수출경합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외무역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01%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5.65%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991년에는 2.04%로 한국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면서 중국의 우위가 지속·확대되었는데 1999년에는 그 격차가 1% 수준으로 증대되었고 2000년에는 1.24%로 확대되었다.

<그림 1> 중국의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그러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WTO 가입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문제는 각 품목별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 변화가 우리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교역구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경합관계보다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와 중국간의 무역보완도 지수⁴⁾를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2> 한국과 중국의 무역보완도 지수

	1990	1995	1998	1999	2000
무역보완도 지수	0.58	0.71	0.86	0.92	0.94

주: $C_{ij} = X_i' \cdot M_j / \|X_i\| \cdot \|M_j\|$

단, C_{ij} : 수출국 i(한국)의 수입국 j(중국)에 대한 무역보완도 지수, X_i : i국 수출의 품목별 비중 벡터, X_i' : X_i 의 전치행렬, M_j : j국 수입의 품목별 비중 벡터, $\|X_i\|$: i국 수출의 품목별 비중 벡터의 내적 제곱근, $\|M_j\|$: j국 수입의 품목별 비중 벡터의 내적 제곱근

자료: 1999년까지는 한국은행, 2000년은 KOTIS 자료를 기초로 작성

1990년에 0.58을 기록했던 양국의 무역보완도 지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0.94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수출 비

4) 무역보완도지수는 A라는 나라의 수출구조와 교역상대국 B의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써 이 수치가 1을 가지면 두 나라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여 0을 가지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이 높은 품목이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입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수출구조가 중국의 수입구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3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⁵⁾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1994년에 각각 0.39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는 0.37과 0.34로 1994년의 그것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3> 미국 및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

	1994	1997	1998	1999	2000
미국시장	0.39	0.32	0.34	0.35	0.37
일본시장	0.39	0.35	0.37	0.36	0.34

주: $ESI(a,b,c) = \sum \text{Minimum} [X_i(a,c), X_i(b,c)]$, $ESI(a,b,c)$ 는 c국 시장에서 a국과 b국의 수출경합도 지수, $X_i(a,c)$, $X_i(b,c)$ 는 각각 a, b국의 c국에 대한 총수출중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1999년까지는 한국은행, 2000년은 KOTIS 자료를 기초로 작성

한편 제3국 시장에 있어서의 한·중간 수출경합관계울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2000년 HS 코드기준 품목별 데이터로부터 수출비중, 무역특화도 지수⁶⁾, 제3시장에서 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⁷⁾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품목별 경합여부를 조사하였다. 요컨대 각 품목별로 해당 시장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큰 품목은

- 5) 수출경합도 지수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양국간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제3국에서 양국간 수출상품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양국간의 경쟁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이다(완전경합시 1, 무경합시 0의 값을 가짐).
- 6) 무역특화도 지수는 각 품목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각 품목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품목별 수출액 - 각 품목별 수입액)/(각 품목별 수출액 + 각 품목별 수입액)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1이면 완전 수입특화상태를 의미한다.
- 7)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정국에 있어서 각국의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총 수출점유율로 나눈 값으로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해당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2000)].

$$RCA(i,j,k) = X_{ijk} / X_{ik} \div X_{jk} / X_k = X_{ijk} / X_{jk} \div X_{ik} / X_k$$

$RCA(i,j,k)$: k시장에서 i국의 j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X_{ijk} 및 X_{ik} : 각각 k시장에 대한 i국의 j품목 수출액, k시장에 대한 i국의 총수출액.

X_{jk} 및 X_k : 각각 k시장의 j품목 총수입액, k시장의 총수입액.

상대적으로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양국 모두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보다 큰 품목을 양국간 경합관계가 있는 품목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미국시장과 일본시장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수출시장이 제외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비중이나 무역특화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양국 모두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든지 수출비중이나 무역특화지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양국간 경쟁품목에서 제외하였다. 또 반대로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하더라도 양국모두 수출비중이나 무역특화지수가 높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경쟁품목으로 고려하였다.⁸⁾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부문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농수산물·음식물, 가죽 및 모피, 신발류, 의복 액세서리, 비금속광물제품, 가구 및 무기, 완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고무 및 타이어, 자동차, 선박, 기계류 및 정밀기기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부표> 참조). 한편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으로는 섬유류, 철강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등으로 조사되었고 광물 및 시멘트, 화공품, 나무 및 종이제품, 귀금속 등에서는 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들의 세부사항에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⁹⁾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HS 2단위 단일코드 기준으로 양국 모두에 있어 가장 높은 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부문인데(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 가운데 26.9%, 중국의 경우 전체 수출 가운데 18.5%를 차지) 전

8) 품목별 경합여부가 단일 지수가 아닌 다수의 지수를 활용하여 도출되었기 때문에 경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9) 세부 품목에 대한 분석은 해당 분류산업내 HS2 코드, 혹은 HS4 코드를 사용하여 현시 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비중을 재산출 후 경합관계품목을 평가·선정하였다.

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휴대폰 및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이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주요 품목은 전동공구, 면도기와 이발기, 가정용 전기기기, 변압기 카세트 플레이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동기와 발전기, 축전지, 전기식 물가열기, 난방기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마그네틱 녹음기, 영상기록·재생기, 무선전신·전화 또는 라디오 방송기, 텔레비전 수상기 및 부분품, 인쇄회로 등 일부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강과 금속제품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전체수출 대비 6.8%와 6.7%를 기록하고 있는 부문이다. 철강제품, 금속제품(공구, 도구, 스푼과 포크) 등에서 양국이 경합관계를 보였으며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세부품목은 연(납), 아연, 주석, 기타 금속제품이고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철강, 동 등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현시비교 우위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한국은 1.1, 중국은 0.2)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이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0.3, 중국은 0.5). 그러나 일본시장에서 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둘 다 1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도 미미하며 무역특화지수(한국 0.8, 중국 0.1)와 수출비중(한국 8.9%, 중국 1.8%)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를 한국이 경쟁우위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승용차와 기타 차량(전체 수출대비 6.91%, 자동차 부문대비 78%), 그리고 신체장애자용 차량 부문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로 중국은 이를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부분품과 부속품, 유모차, 트레일러 등에서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선박 부문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다소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및 항공기 부문에서는 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품목별 경쟁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중국은 경공업 부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화학공업 부

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국이 다른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이유로 양국간 경합이 크게 높지 않고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무역보완도 지수나 제3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 양국간 경합 관계 분석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과 중국간 경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현재 한·중간 경쟁관계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전체수출에서 58.9%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양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의 비중은 17.1%에 불과하며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의 비중(6.9%)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의 한·중간 수출구조와 앞에서 언급한 향후 수출·수입 전망을 감안하면 중국이 WTO 가입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상승이나 중국의 한국경제 추월과 같은 현상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표 4> 2000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품목 및 수출비중 요약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	한국과 중국의 경합품목	중국의 비교우위 품목	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품목
주요 품목	종이 및 판지, 인조장섬유, 공업용 의방직용 섬유제품, 철강, 기계류, 선박, 승용차, 집적회로, 열전자관, 송신기기 등	베이커리, 플라스틱, 건직물, 면직물, 인조단섬유, 특수직물, 모자류, 유리 및 유리제품, 철강제품, 금속제품, 의공구, 악기, 전동기 및 발전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녹음기 등	식용채소, 과일, 소금, 시멘트, 무기화합물, 화약류, 모피, 가죽제품, 로우프 및 케이블, 신발류, 아연, 주석, 납, 시계 및 부품, 완구, 자전거, 유모차, 유선전화, 변압기, 카세트 플레이어 등	유기화학품, 의약품, 목재, 코르크, 귀금속, 니켈, 알루미늄, 항공기, 트랙터, 차체, 발전세트 등
한국의 수출비중	58.9%	17.1%	6.9%	17.1%
중국의 수출비중	19.2%	25.5%	39.5%	15.8%

주) KOTIS 통계를 기초로 HS 2단위 또는 HS 4단위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비중 등을 산출한 후 각 품목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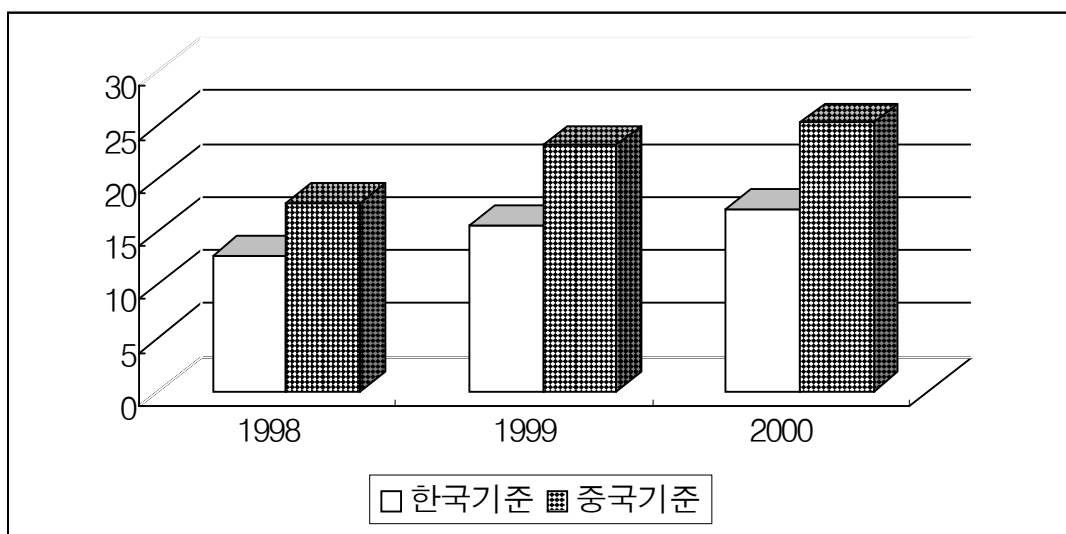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에게 직접적이거나 가시적인 이점 외에 간접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중국의 제도·체제가 정비되고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산업구조가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어느 정도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중화학공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공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기전자 부문을 예로 들면 최근 3년간 동 부문이 중국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4.8%에서 2000년 18.5%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 우위지수 격차도 1998년에는 약 1.5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0.8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전자부문에서 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한국이 경쟁력을 가졌던 철강, 화섬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은 자체생산능력을 갖추는 등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일례로 철강 및 금속제품이 1998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9.0%, 6.9%였으나 2000년에는 6.8%, 6.7%로 변화하였으며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각 1998년에 1.7, 1.1에서 2000년에는 1.2, 1.4로 상황이 역전되었다. 또한 일본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도 1998년의 3.2, 1.0에서 2000년에는 2.3, 1.1로 축소되었다. 한편, 자동차 부문은 현재 무역특화지수나 수출비중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격차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1998년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0.6, 0.1에서 2000년에는 1.1, 0.2로 격차가 확대). 그러나 중국은 선진국 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통해 빠른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으로 자

동차 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어 중국의 기술수준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경합품목 수출비중의 변화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한국과 중국의 경합품목 수출비중은 한국을 기준으로 전체 12.7%였으나 1999년에는 15.6%, 2000년에는 17.1%로 매년 상승하였다(중국기준으로는 1998년 17.6%, 1999년 23.1%, 2000년 25.5%를 기록). 이러한 경합품목 비중의 증가추세는 향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국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관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¹¹⁾

<그림 2> 최근 3개년간 한·중간 경쟁품목 수출비중 추이



한편,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을 통해서 공업구조 개혁 및 고도화, 서비스 부문의 발전제고, 국민경제 및 사회의 정보화 가속화 추진 등 산업구조 재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5

10) 1998년 및 1999년의 양국간 수출경합품목은 부표를 참조.

11)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합품목 비중은 17.1%에 지나지 않고 경합품목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경쟁력 급상승이나 한국경제 추월 등과 같은 상황이 쉽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심화는 물론 중국경제의 한국경제 추월과 같은 극단적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기 5중전회에서 심의·통과된 중국 10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10년 기간을 경제구조조정, 대외개방의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성 등 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시기로 이해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속도 유지,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제고, 전략적인 경제구조조정 달성,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진일보,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화, 과학기술 및 교육의 신속한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으로서 1)공업구조 개혁 및 고도화의 측면에서는 첨단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어 기술진보를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공업생산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특화 및 규모의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주력하고 2)서비스 부문의 발전 제고 측면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전체적인 수준제고를 위해서 금융, 회계, 자문, 법률, 정보 서비스 부문을 적극 개발하고 서비스업의 시장화를 가속추진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3)정보화 가속추진의 측면에서는 정보화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공업화 및 현대화 실현의 중심축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정보 네트워크 건설 및 정보화 종합관리 강화, 정보산업의 발전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시켜 한국과 중국의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조망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3시장에서의 한·중간의 경쟁관계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업의 경쟁력 문제를 재고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시장별 대응방안으로서 세계시장, 중국시장, 그리고 한국시장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 시장별로 적합한 세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²⁾ 세계시장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하여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국 기

12) 각 시장별 세부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는 본 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향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업들이 취약한 디자인, 설계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현지화 전략의 심화·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시장 공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시장에서 중국상품의 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¹³⁾ 중국의 무역보복을 피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수출증대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 우리나라 조정관세 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입증가,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대중국 수입 유발 효과 등의 측면에서 이를 예상할 수 있다.

5. 맺음말

중국의 WTO 가입이 시사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무역·투자확대 이상의 의미, 즉 세계시장에서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라고 하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WTO에의 가입은 가입협상에서 약속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를 세계시장경제 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키게 될 것이고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은 자국경제권의 외면적 확대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그 자체가 중국경제를 중국적 틀 속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라는 큰 틀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하자면 중국경제사에 있어서 일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5년만에 성사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중국내 구조조정과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 중국의 경합관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양국간 경합관계가 심화·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성장을 우리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의 경쟁우위를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보다 기본적인 전략 개념으로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그 격차를 확대·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시장원리에 대체되기보다는, 국가권력이 시장원리의 적용범위와 방향을 전략적 혹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향후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노동·자본시장의 형성 및 발전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의 틀을 재정비하기

14) 장경섭,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중국의 시장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중국의 개혁』, 중국학회 편, 21세기 북스, 1999.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중국보다 우월한 시장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 시스템의 우월성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기업의 유치,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산업구조조정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이나 지식기반경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정보화 기술에서의 격차 유지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관련 인프라 수준이 미약하고 아직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환경은 극히 저조하며 정부의 통제가 심해 관련산업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이미 일정수준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 관련 콘텐츠 개발과 제도정비의 중요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활용하여 정보기술 발전속도를 더욱 증대시켜 나간다면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지도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이웃나라 대만이 그러하듯 한국경제도 이제는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경제권 속에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즉 이제는 정부가 우리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그리고 기업이 생산 및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동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수립해야만 한다. 결국 한국의 향후 전략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중간재·자본재 산업의 지식·기술 격차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투자가 필수적인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국제비즈니스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구촌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제부터는 MADE IN KOREA에서 MADE BY KOREA로의 전략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용준 편저, 『중국 산업별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 현대중국연구소, 2000.
pp. 274~290.
- 김주훈 외, 『동북아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2001, pp. 127~154, pp. 157~173.
- 대우경제연구소, 『중국 WTO 가입전망과 영향분석』, 통권 99-D-05, 1999.
- 박정동, 『21세기 중국』, 한국경제신문사, 1996, pp. 21~44, pp. 213~251.
- 박정동 외,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본 한·중간 주요산업의 경합 및 보완관계』, 한국개발연구원(KDI), 2001,
- 박정동편역, 『MADE IN CHINA』, 시대의 창, 2002. 07.
- 박정동편저, 『MADE IN 차이나 충격』, 한국경제신문, 2002. 09.
- 양평섭,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계획과 그 영향』, KIEP, 2000, pp. 46~76.
-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주)교보문고, 2000, pp. 334~383.
- 장경섭,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중국의 시장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중국의 개혁』, 중국학회 편, 21세기 북스, 1999, pp. 19~44.
- 정구현·엄구호 편저, 『중국의 시장과 기업』, 나남출판, 2000.
-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시너지 극대화 방안의 연구』, KIEP, 2000.
- _____,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 관세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KIEP 수시조사보고, 1999.
- 정종인·이한녕, 『우리 나라와 중국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한은조사연구 2000-4, 한국은행, 2000, pp. 1~13.
- 林毅夫 外, 『中國的奇蹟: 發展戰略 與 經濟改革』, 上海人民出版社·上海三聯書店, 1994.
- 鮫島敬治·日本經濟研究セクター編 『中國WTO加盟の衝撃』, 日本經濟新聞社, 2001. 5.
- 中國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 人民日報, 北京, 2001. 3. 19.

Chae, Wook, and Hongyul Han,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KIEP, 2001, pp. 24~40.

Lloyd, Peter John, *China in the global economy*, Edward Elgar, 2000.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_____,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Nikkei Business, 2000. 11. 27.

Oshima, Harry T., *Economic Growth in Monsoon : A Comparative Survey*, University of Tokyo, 1987.

Park, Jung Dong,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China and Their Impact on Its Economic Development*, PRAEGER, 1997.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n the United State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Publication 3229, 1999.

USTR, U.S. China sign historic trade agreement, <http://www.uschina.org>, 1999.

Woo, Wing Thye,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ransition to an Open Market Economy: Chin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Centre, 1999.

『Vision 2011 Project』, 성장동력반 토론회 자료, 2001. 7. 23.

<http://www.textile.or.kr>

<http://www.steels.co.kr>

<http://www.haochina.co.kr>

<http://my.netian.com/~itv52/>

<http://www.chinatown.co.kr/>

<http://www.richgo.net/>

<부표 2-2> 1999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품목 및 수출비중 요약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	한국과 중국의 경합품목	중국의 비교우위 품목	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품목
주요 품목	고무 및 타이어, 종이 및 판지, 인조장섬유, 부직포, 공업용 의방직용 섬유제품, 철강, 동, 기계류, 선박, 승용차, 인쇄회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열전자관 등	베이커리, 플라스틱, 견직물, 면직물, 양모, 인조단섬유, 모자류, 유리 및 유리제품, 철강제품, 금속제품, 금속제거기, 금속제거기, 기타제품, 악기, 잡품, 전동기 및 발전기, 축전지, 마이크, 로폰, 헤드폰, 녹음기, 텔레비전, 무선송수신기, 트레일러 등	식용채소, 과일, 소금, 시멘트, 무기화학품, 화약류, 모피, 가죽제품, 로우프 및 케이블, 신발류, 아연, 주석, 납, 철도용 기관차량, 기계 및 부분품, 완구, 자전거, 가구, 유모차, 변압기, 방수송수신용 기기, 전기절연제품 등	유기화학품, 담배, 광물성 연료, 의료용품, 비료, 귀금속, 니켈, 알루미늄, 항공기, 정밀기기, 트랜저, 차체, 발전세트, 유선전화·전신용 기기, 축전기 등
한국의 수출비중	54.3%	15.6%	6.8%	23.0%
중국의 수출비중	17.0%	23.1%	37.1%	22.8%

<부표 3-2> 1998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품목 및 수출비중 요약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	한국과 중국의 경합품목	중국의 비교우위 품목	양국 모두 경쟁력이 없는 품목
주요 품목	고무 및 타이어, 인조장섬유, 메리야스·뜨게질 편물, 철강 및 철강제품, 선박, 기계류, 악기, 무선 전신·전화용 송신기기, 인쇄회로, 열전자관, 트랜지스터,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등	베이커리, 플라스틱, 견직물, 인조단섬유, 특수직물, 모자류, 아연, 금속제품, 의 기타제품, 철도용 기관차량, 잡품, 축전지, 난방기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텔레비전 수상기, 무선 송수신기기, 램프 등	채소, 과일, 소금, 시멘트, 무기화학품, 화약류, 가죽제품, 모피, 로우프, 케이블, 지팡이, 우모, 납, 주석, 시계, 가구, 완구, 전동공구, 면도기 및 이발기, 무선전신·전화기기, 자전거, 유모차, 트레일러 등	당류, 담배, 광물성연료, 유기화학품, 비료, 의료용품, 원피(모피제외), 양모, 동, 니켈, 항공기, 정밀기기, 일차전지, 음성기록용 테이프 및 매체, 전기저항기, 개폐기 및 계전기 부분품, 트랜저, 화물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비중	54.3%	12.7%	6.5%	26.5%
중국의 수출비중	18.3%	17.6%	39.0%	25.1%

디플레이션도 ‘Made in China’인가?

중국은행(BOC GROUP)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요즘, 중국은 여전히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며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과 동시에 중국은 다시 한번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적인 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특징과 이에 따른 세계적인 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의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 디플레이션 현상의 변천

1998년 4월경 중국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동남아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 각국의 화폐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됐고 중국은 이에 따른 내수 시장 약화와 위안화 평가절상 등 이중고를 겪었다. 디플레이션은 2000년 5월까지 약 2년간 지속됐고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월 기준 최대 하락폭인 2.2%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1년 반에 걸쳐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수출 및 FDI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과 확대 재정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이래로 중국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수준을 유지한 올해 2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근에서야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7% 하락했으며 이는 최대 하락폭을 보인 지난 4월의 1.3%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2002년 1~9월 중 물가 수준도 전년동기대비 0.8% 하락했다. 분야별 가격을 보면, 식품류, 소비품 및 비소비품의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 항목의 가격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물가등락 구조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상품 가격 하락폭이 서비스 가격 하락폭을 상쇄하고 나아가 전체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이어질 정도로 크다.

중국 디플레이션의 특징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의 문제점으로는 (1) 소비자 기대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출을 미루게 돼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2) 투자단계의 실질적 코스트는 증가하나 회수단계의 가격 하락세로 회수율이 낮고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02년 8월까지 일본은 35개월째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보였고 홍콩도 45개월째 디플레이션 상태다. 두 지역 모두 한때는 경제가 활발했으나 현재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의 위협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은행주식 매입이나 자금 지원, 대규모 장기 부채에 대한 상환 독촉 등 극단적인 방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는 의문이다. 홍콩도 지난 4년간 두 차례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일본이나 홍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원인도 독특하고 영향도 복잡한 편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하에서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1998~2001년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98년 7.8%, '99년 7.1%, '00년 8.0% 및 '01년 7.3%에 달하고 금년 3/4분기에도 7.9%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의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특수성을 설명하는 한 예가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이렇듯 간단한 현상의 배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정 중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한다. 중국 노동생산력의 거대한 잠재력은 최근 경제성장 과정 중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내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고 총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 달한다. 금년 상반기 7.8%의 경제성장률 중 수출부문의 공헌도는 45%이고 하반기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가 수

출 증대뿐 아니라 정부투자와 함께 GDP 성장에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추세가 심화되면서 2002년 3/4분기 중국의 투자유치액(실행 기준)이 4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4% 증가)에 달했다. 외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과 함께 이전에 기타 국가에서 운영하던 제조업 생산라인을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력 공급곡선은 거의 수평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가격으로 거의 무한대의 공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제조업에 종사 가능한 노동 인구는 일본과 아시아 '4용(龍)'을-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합친 것보다 무려 7배에 달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아시아 '4용(龍)' 평균의 1/8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기술이전을 중시해 수출 상품 중 하이테크 IT 제품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미 수출 증가에 대해 IT제품의 기여도가 40%에 달한다.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은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의 생산 잠재력을 점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의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4%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을 앞서는 수준이다.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의 중국이전은 중국의 수출 및 경제 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에 따라 앞으로 생산라인의 중국이전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중국 경제 성장은 세계경제 주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특히 노동생산성의 제고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생산력 증대로 공급은 증가했으나 중국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데서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농촌인구 비중은 2000년 현재 63%로 집계됐으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도농간 소득 격차가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35개 도시민의 평균 수입은 9,218 위안으로 농촌 지역 1인당 평균 현금수입의 4배에 달한다. 또, 최근 5년간 도시민 평균 수입은 경제성장 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인구의 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곧 경제성장 속도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평균 수입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 소득이 하락하는 문제까지 더해져 내수 시장에 제약을 가져오고 생산 과잉이 물가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 또, 도시 인구 중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샤강'(下崗) 인원의 소득감소도 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생산력 증대 의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기타 주요 요인으로는 수입과 화폐 요인을 들 수 있다. 원자재, 반제품 및 부품 수입을 포함해 수출 가공에서 생산라인 이전까지 중국의 수입 증가폭은 수출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의 화폐가 미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됐고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미 달러와 페그된 위엔화의 강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역경로를 통해 디플레이션이 중국으로 유입됐다. WTO 가입 후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관련 제품의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낮은 노동원가로 인해 중국은 수출과 내수 상품 모두 낮은 수준으로 가격책정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의 압력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전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 하는가?

중국은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코스트 및 노동 생산력 제고 등으로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화 과정 중 무역경로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판단한 것으로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나 내부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생산라인의 중국이전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저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에 의한 것이다. 또,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국 수출상품이 해당 수입국 소매시장 가격을 결정할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국은 아직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상품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물가를 좌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이 전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써 일부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이론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낮은 노동코스트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전의 환율 상황에서 만약 당시 중국의 노동코스트를 달러로 환산해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원동력 중 하나다. 이 행기준으로 볼 때,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2001년 한해에 469억 달러에 달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와 미국의 LTCM 위기, 1999~2000년에 걸친 미국 증시의 버블과 2001년 경기 쇠퇴 등을 겪으면서 위안화 한율을 유지해 왔던 중국은 새로운 성장점을 찾게 됐다.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자유치액은 더욱 증가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WTO가입 후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계, 국제관세 적용, 수출입조건 대폭 개선 등)을 하게 되어 외국자본의 중국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의 외자유치 규모는 다시 한번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은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가 끊임없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상품가격에 대해 더욱 민감해 지고 가격결정력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저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자들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면서 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전세계 생산기지의 중국이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가격 형성에 있어 중국 요인은 세계적인 저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결과일 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기지의 중국이전에 따른 원가절감은 약 20~30% 폭이 될 것이며 이는 즉, 상품가격에 대한 압력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수출액이 전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제조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로, 이 중 일부 제조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세계 수위의 생산국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전세계 카메라의 50%, 에어컨과 TV의 각각 30%, 세탁기의 25%와 냉장고의 약 2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그렇다고 중국을 전세계 생산기지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공업생산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이고 격차도 큰 편이다. 또, 중국 자체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특히, 위와 같이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제품들은 수출보다는 모두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산 제품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중국산 제조품 총 수출액은 2,358억 달러로 전세계 제조품 총 수출액의 5.3%를 차지한다. 또,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조품의 상당수는 부품과 자본재로써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는 의견은 명백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품 가격의 영향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장출고가격이나 FOB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수입국의 최종 소비자가격 책정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플레이션 '수출'의 영향은 상품 유통경로의 어느 한 부분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수입상품 소매유통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중간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 가격은 중국공장 출고가의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수출상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혜택이 대부분 중간상들이 차지하는 이윤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에게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요인이 수입지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상황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 중국은 이미 일본을 대신해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통해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중국이 전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견해에 대한 시비(是非)를 가려보고자 한다.

미국의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핵심생산자물가지수(Core PPI), 소비자물가지수(CPI), 핵심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등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그 중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8월까지 전반적으로 1.5~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저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플레이션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예로 들면, 생산품에 따라 상품, 서비스 및 건축지수의 3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만일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의 물가지수가 금년 상반기에는 2.2% 상승하면서 0.8%의 상품물가지수 하락을 상쇄하지 않았다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1.2%의 상승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8월 시행한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 중 약 30%가 올해 상반기에 가격하락을 보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가격 상승만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요인이 미국의 서비스 분야 가격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선 중국의 서비스 분야 발전 상황이 아직은 미국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둘째, 상품 무역에 비하면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 정도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상품 가격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나 2001년 대미 수입국 중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9.3%에 불과하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수입가격지수(Import Price Index)중 개별적으로 중국 수입상품의 가격지수를 산출한 자료는 없으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경제국(아시아 4 龍 포함)의 최신 수입상품가격지수는 평균 하락폭이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중에서 최대로 떨어지는 신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미국의 주요 수입이 수입상품가격의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의 실질 개인소득은 경기침체 중에도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미국의 상품가격을 하락시켰다면 미국 소비자의 생활수준은 이로 인해 제고되고 미국경제도 모처럼 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미국 서비스 시장이 붕괴해 서비스 가격지수가 떨어져야만 미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디플레이션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이 전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판단은 옳지 못하다.

내부 요인에 의한 홍콩의 디플레이션

홍콩은 중국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는 중국, 특히 주강삼각주와의 일체화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홍콩이야말로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연, 홍콩의 디플레이션도 'Made in China'인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 수입의 주요한 공급지로 2001년에는 1위, 금년 상반기에는 2위를 기록했고 홍콩 총 수입액의 13~14%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이외의 여타 국가 수입품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산 제품의 단위가격은 1.6% 하락했고 일본, 대만 및 미국산 제품의 단위가격 하락폭도 각각 4.1%, 6.0% 및 2.2%로 전체적으로 보면 3.1%에 달한다. 올해상반기 중국산 수입품의 단위가격은 3.4% 하락한데 비해 기타 국가 수입품 단위가격도 각각 6.1%, 5.4%, 5.3% 하락했고 전체적인 하락폭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홍콩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홍콩 디플레이션의 50% 이상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홍콩의 경우 주거비용 지출이 종합 소비자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29.91%로, 1998년 및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주거비용지출지수는 총 15.6% 정도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종합물가지수(누계)를 4.65%하락시켰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종합 소비자물가지수(누계) 하락폭인 9.02%의 51%에 달한다. 상점 및 사무실 임대료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비용이 하락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디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60%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제학에서 요소가격 균등화정리(Factor-Price Equalization Theorem)라는 것이 있다. 홍콩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융합되는 추세에 따라 홍콩과 중국(특히 심천)의 물가 격차가 점차 좁혀진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요의 이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공장 및 부대 설비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용 건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명확치 않다. 최근 홍콩사람들이 북

부지역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장기 거주지로서가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홍콩의 주거용 건물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현재까지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홍콩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공급 과잉 및 지난 몇 년간의 경기 침체 등에 의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때문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홍콩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수요 약세를 꼽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개인소비지출은 지난 몇 년간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의 폭으로 줄어 들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소비 유출, 특히 홍콩의 소비가 북상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 홍콩인의 외지(外地) 지출액은 '90년대 중반 이래 급격한 증가를 보인 이후 매년 800억 홍콩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주강삼각주 부근에서 소비되고 있다. 외지 소비지출의 증가는 홍콩내 수요를 감소시켜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주게 돼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된다. 그러나, 홍콩인의 외지 지출이 전체 개인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러한 현상이 홍콩의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면은 분명히 있으나 이 역시 주요 원인은 아니다. 홍콩내 소비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와 실업문제, 소득 불안정 등의 악재가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중국-홍콩간 경제 융합이 홍콩의 디플레이션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으나 주요 원인은 역시 홍콩 자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디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홍콩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안정되고 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와 제도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 ☐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공동 발표했으며 2002년 12월 1일부로 시행함
- ☐ 기업설립 신청 및 심사비준
 - 시공 총도급 특급과 1급 및 전문업 도급 1급 기업의 설립비준 및 자질비준은 중앙에서, 그 이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장함
 - 중앙에서 관장하는 건축업기업 설립은 성급 단위의 초보심사(30일 이내), 국무원 이송(10일) 및 국무원의 건설행정주관 부문 의견청취(30일) 및 자체심사(30일)의 절차로 진행함
 - 기업설립 및 자질 신청시에는 설립신청서, 가행성보고서, 정관, 법인 등기등록, 은행신용증명, 경영 및 기술인원 증명서류 및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해야 함
- ☐ 공사 도급 범위
 - 외국인투자 독자기업은 자질등급 허가범위내에서, ①전액 외자투자 공사, ②차관공사로서 국제입찰하는 공사, ③외자가 50% 이상인 공사 또는 외자가 50% 이하이나 기술적으로 중국기업 독자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로서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은 중외연합건설공사, ④기술적으로 중국기업 독립시공이 불가능한 국내투자 공사로서 성급 단위 정부의 비준을 받은 공사(단, 중외건축기업이 공동으로 도급받아야 함.)에 한해 도급 가능
 - 외국인 합자, 합작기업은 자질등급의 허가범위 내에서 도급 가능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건 설 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3호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관리규정》은 2002년 9월 9일 건설부 제63차 상무회의 및 2002년 9월17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10차 부장판공회의에서 심사통과되었기에 공포하고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왕광도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 왕광도
2002년 9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이 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외국인투자 건축기업이라 함은 중국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자건축업기업,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및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을 설립하고 건축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건축업기업 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합법적인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설립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설립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외상투자건축기업의 자질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

제6조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은 등급별, 분류별 관리를 진행한다.

시공총도급서열의 특급과 1급, 전업도급서열의 1급 자질의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설립을 심사비준하고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자질을 심사, 비준한다. 시공총도급서열 및 전업도급서열의 2급 또는 2급 이하와, 노무청부서열 자질의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설립을 심사, 비준하고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자질을 심사, 비준한다.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인 경우, 설립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하고 자질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심사·비준한다.

제7조 시공총도급서열 특급 및 1급, 전업도급서열 1급의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을 설립 및 자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인은 설립코자 하는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설립을 신청한다.
-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 동의 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보고한다.
- (3)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초심자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료를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이송해 의견을 청구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의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의 서면의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또는 비준하지 않는다는 서면결정을 내린다. 비준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업등록 부문에서 가서 등록한다.
- (5)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건축업기업자질 신청은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8조 시공총도급서열 및 전업도급서열 2급 또는 2급 이하나, 노무청부서열의 외국인투자 건축기업을 설립하고 자질을 신청하는 절차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과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당해 지구 실정을 감안하여 본 규정 제7조 및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심사·비준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자질은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서류를 신고, 등록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이 자질등급을 승격하거나 주항목 이외의 자질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행정주관부문에 가서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투자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립신청서
- (2) 투자측이 작성했거나 승인한 가행성연구보고
- (3) 투자측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계약 및 정관 (그중 외자건축업기업의 설립은 정관만 필요함)
- (4) 기업명칭 사전비준통지서
- (5) 투자측 법인등기등록증명,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 (6) 투자측이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의 임명문서 및 증명서류
- (7) 등기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심사한 투자측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1조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자질 신청시에는 건설행정주관부문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 자질신청표
- (2)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 (4)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 (5) 투자측에서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기업재무책임자, 경영책임자,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명문서 및 증명문서
- (6) 등기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심사를 거친 투자측의 최근 3년 자산부채표 및 손익계산서
- (7)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서 제출하기로 정한 자료

제12조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의 중국측 경영자의 출자총액은 자본금의 25%이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본 규정 실시 전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은 반드시 본 규정 및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 근거해 자질등급을 새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중문이어야 하며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어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공사도급범위

제15조 외자건축업기업은 자질등급 허가범위 내에서 아래의 공사를 도급 받는 것을 허용한다.

- (1) 전부 외국투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 및 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2) 국제금융조직에서 지원하고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게 되는 건설항목
- (3) 외자가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항목 및 외자가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항목
- (4) 국내 투자이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중국건축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항목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은 중외건축기업이 공동으로 도급 받을 수 있다.

제16조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은 반드시 자질등급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도급 받는다.

제4장 감독관리

제17조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등급표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공포한 건축업기업자질등급표준을 집행한다.

제18조 시공총도급공사를 도급 받은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건축공사 주요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과 여타 건축업기업이 공동으로 도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질등급이 낮은 기업의 업무허가 범위내의 공사를 도급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이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자질 허가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를 명하여 정리하게 하며 자질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하면 자질증서를 취소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제21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건축활동에 종사시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건축공사품질관리조례》,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본 규정 실시 전에 《외국기업도급공사 자질증서》를 이미 취득한 외국기업이 투자,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공사도급실적 등에 근거하여 상응한 등급의 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외국기업이 신규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자질등급은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의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건축기업을 투자설립하고 건축활동에 종사할 때 이 규정에 따른다. 법률, 법규,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 및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각각의 직책책임에 따라 해석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2003년 10월 1일부터 1994년 3월 22일 건설부가 공포한 《중국 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기업자질관리 실행방법》(건설부령 제32호)은 폐지한다.

제27조 2002년 12월 1일부터 건설부 및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설립에 관한 약간의 규정》(건건[1995]533호)은 폐지한다.

『중점납세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방법』의 주요 내용

□ 북경시는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국가세무총국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북경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정했으며 2002년 11월 1일부로 시행함

□ 중점 납세자 범위

- 연간 수입이 10만위안 이상인 개인
- 기타
 - (1) 개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의 법정대표자, 총경리 또는 주요 책임자
 - (2) 일개월이내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
 - (3) 경외(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을 포함)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 (4)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국적 개인
 - (5)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정한 자진신고납부를해야 하는 개인

□ 관리 방법

○ 관리대장 작성

- 주관세무기관은 세무공고 등 방법으로 중점납세자 또는 근무단위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송달
- 중점납세자 또는 근무단위는 주관세무기관이 정한 기간내에 북경시 지방세무국 개인소득세 관리정보시스템(<http://www.tax861.gov.cn/>)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중점납세자 기초정보표를 제출하고 주관 세무기관은 이에 근거해 중점납세자 대장 작성
- 중점납세자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중점납세자 또는 그 직장에서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 정보 조회

- 주관세무기관은 수권범위에 따라 개인소득세 관리정보시스템의 관련 정보 조회
- 구·현 지방세무국, 분국이 해당 관할지 이외의 중점납세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북경시지방세무국의 승인을 받음
- 세무소에서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중점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시국 또는 구.현지방세무국, 분국의 승인을 받음

○ 처 별

-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가 중점납세자 기초정보표, 중점납세자 납세신고서, 원천징수세금명세신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사안이 심각할 경우, 2천 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중점납세자가 신고통지를 받고 신고를 거절하거나 허위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며,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원천징수단위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경우,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북경시지방세무국

중점납세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북경시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조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관법》이라 약칭)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세무총국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발[2001]57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북경시 구체상황과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함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중점납세자라 함은 연간수입이 10만위안 이상인 개인과 아래 개인을 말함

- (1) 개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의 법정대표자, 총경리 또는 주요 책임자
- (2) 일개월 이내에 두 곳 이상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개인
- (3)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을 포함)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 (4)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국적 개인
- (5) 주관세무기관에서确定的 자진신고납부 해야 하는 개인

제3조 본 방법은 북경시 지방세무국부문에서 관할하는 중점납세자와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단위 징수관리에 적용함

제4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의 상업비밀과 개인비밀을 법에 의거해 보호해야 함

제5조 주관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가 기재, 보고한 중점납세자 기초정보, 납세신고와 원천징수세금명세신고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총괄분석해야 함

제2장 서류 관리

제6조 주관세무기관은 본 방법 규정에 근거해 세무공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중점납세자 또는 근무단위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함. 중점납세자 또는 근무단위는 주관세무기관이 정한 기간내에 북경시지방세무국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이하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이라 약칭, <http://www.tax861.gov.cn>)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중점납세자기초정보표'를 보고,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은 이에 근거해 중점납세자 대장을 작성함.

제7조 직장이 있는 중점납세자는 일률적으로 직장에서 '중점납세자 기초정보표'를 기재·보고하고, 직장이 없는 중점납세자는 본인이 '중점납세자 기초정보표'를 기재·보고함. 본 방법 제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열거한 중점납세자는 본인과 직장에서 '중점납세자 기초정보표'를 기재·보고해야 함.

제8조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는 '중점납세자기초정보표'를 보존해야 함. 중점납세자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중점납세자 또는 그 직장에서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함

제9조 주관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가 기재, 보고한 '중점납세자기초정보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로 하여금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제10조 중점납세자 대장은 2급관리를 실시하며, 각 구·현지방세무국, 분국에서 관할 중점납세자 대장을 관리하고 시국에서 시전체 중점납세자 대장 관리를 책임짐

제11조 주관세무기관은 수권범위에 따라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구·현 지방세무국, 분국이 해당 국 관할이 아닌 중점납세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시국의 수권을 거쳐야 함. 세무소에서 해당 세무소 관할이 아닌 중점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시국 또는 구·현지방세무국, 분국의 수권을 받아야 함

제12조 주관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 개인소득세징수관리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중점납세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매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상황은 반드시 시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함. 중점납세자 서류는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함

제3장 납세신고

제13조 원천징수단위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시, 규정대로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표》를 송달, 총괄신고하는 외에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신고방식으로 당해 단위의 중점납세자에 대해 인별로 《원천징수세금명세신고서》를 기재 보고함

제14조 본 방법 제2조 제2항부터 5항에 열거한 중점납세자는 원천징수단위가 중점납세자 취득 각 항 수입에 대해 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개인이 매 항 수입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 7일내(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함)내에 개인소득세관리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신고방식을 통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중점납세자납세신고서》를 기재·보고해야 함.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납세신고 처리 시 합법적인 세금납부증빙을 제시하며 세무기관은 법에 의해 공제해야 함. 상술한 개인이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할 경우 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

제15조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내에 납세신고와 원천징수세금명세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 비준을 거쳐 법에 의해 신고를 연기할 수 있음

제4장 법률책임

제17조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가 본 방법 규정대로 주관세무기관에 《중점납세자기초정보표》, 《중점납세자납세신고서》, 《원천징수세금명세신고서》, 그리고 기타 관련 자료를 보고·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징관법》 제62조 규정에 근거해 기한 내에 시

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2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상황이 심각할 경우 2천원 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18조 중점납세자가 세무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통지를 받았으나 신고를 거절하거나 또는 허위 납세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함. 세무기관은 《징관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고 동시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함

원천징수단위가 전항에 열거한 수단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징관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가산금(滯納金)을 추징하고 동시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함

제19조 세무기관이 《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해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의 비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관법》 제87조 규정에 근거해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소속단위 또는 관련단위에서 법에 의해 행정처분함

제5장 부 칙

제20조 중점납세자와 원천징수단위는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점납세자기초정보표》를 기재·보고하고 납세신고와 원천징수명세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

제21조 본 방법에 미비한 사항은 관련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함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해 구체적인 징수관리조치를 제정함

제23조 본 방법은 북경시지방세무국에서 해석을 책임짐

제24조 본 방법은 2002년11월1일부터 집행함.<끝>